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와 원천징수의 적용 확대 가능성 연구

2017. 12 | 김재진 |

서 언

1803년 영국에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소득세에 원천징수제를 도입한 이후 미국, 일본 등도 전비 확보를 위해 원천징수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원천징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원천징수는 세원의 탈루를 방지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고, 거래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와 징세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정부 수립 이후 「소득세법」이 정비되고 원천징수의 범위가 확대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소득세의 60%, 법인세의 25%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중 82.6조원은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목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업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로 직접세에만 적용되던 원천징수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까지 매입자납부제도로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를 살펴보고 사용하는 용어와 적용하는 범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기반으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에 원천징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맞춰 부가가치세에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적용 시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저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세울 인

상 또는 비과세·감면·소득공제 축소 없이 증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세수 증대방안이라고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시행을 제안한 국세청의 김남중 씨가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원에서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개최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연구방법 및 결과,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신 분들 덕분에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의 교정 및 출판을 담당한 장정순 행정원과 출판팀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가 책임지고 작성한 것으로서, 많은 분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오류나 문제는 전적으로 연구진의 책임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다.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원천징수가 수행되고 있는 법인세과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극히 제한적으로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 적용 가능성 및 원천징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B2B와 B2C 거래에서 카드거래 비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기대효과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한계를 보이며, 부가가치세 갭(VAT Gap)의 추정 및 기대되는 VAT Gap의 감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내지 못했다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3년 나폴레옹 전쟁 중에 재정 확보를 위해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원천징수제의 역사에 대해서부터 정리하고 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을 거쳐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도 원천징수가 시행되고 해방 이후 소득세를 중심으로 원천징수제가 시행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원천징수는 세수 확보라는 장점 이외에도 세수의 평탄화, 조세 자료의 확보, 납세와 징세의 편의라는 많은 장점들로 이어진다.

원천징수의 역사와 장점이라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이후에는 세계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를 정리하였다. 각국의 원천징수 용어 및 원천징수 범위를 정리하면서 원천징수의 특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원천징수 범위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제도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에 대해 거의 대부분 원천징수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있는 편에 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 원천징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원천징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및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부가가치세에 원천징수를 시행하는 방안은 2017년 세법개정안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업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5년 기준으로 327만건, 금액으로는 18.7조원에 달하는 탈루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5년간 178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목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연금소득, 기타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의료·보건용역과 같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세 세수 중 60%가 넘게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전체 소득세의 40%를 넘게 차지한다.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법인세 중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하여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전체 법인세의 25% 가까이 차지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국세청 세수에서 4분의1을 차지한다.

원천징수를 부르는 명칭과 원천징수의 범위는 국가마다 모두 달랐지만 프랑스와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일본의 원천소득세, 인도의 Tax Deducted at Source는 모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원천에서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Withholding tax는 소득의 지급을 보류하여 소득세 탈루를 방지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고, 영국의 PAYE(Pay as You Earn)과 호주의 PAYG(Pay as You Go)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수준과 능력에 맞게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원천징수의 범위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인도와 같이 임대료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세의 일부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있어서 원천징수의 범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현재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원천징수가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는 적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의 필요성이 크고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법인은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95%에 달해 매출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5% 남짓에 불과하여 매출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경우 징수를 통한 추가적인 징세비용에 비해 법인세 세수 증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되었다. 게다가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카드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B2B 업종 법인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B2C 업종의 법인에는 결제수단 간의 원천징수 유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매번 거래마다 원천징수를 적용하게 되면 원천징수액이 누적되어 소규모 법인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추가적인 원천징수 수행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중간예납과의 중복 문제는 법인세 원천징수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개인 사업소득세에도 원천징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법인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소득세 탈루율이 높은 공사대금,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던 시기에는 전문직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하였지만, 과세로 전환되면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전문직 서비스는 거래빈도가 적고, 회당 거래규모가 크며, 원가율이 낮아 유동성 문제

가 발생하지도 않아 충분히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업종별로 체납과 탈루율을 비교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업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형평과세 및 소득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체납비율은 14.8%에 달하고 체납액은 8.9조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탈루는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와 달리 납세자(구매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납세의무자(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폭탄업체를 통한 악의적인 탈루로 인해 VAT Gap이 2010년 기준으로 약 17.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악의적인 탈루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 EU 위원회에서도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도입을 논의하여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부터 부분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핸드폰, 컴퓨터칩, 도매용 가스과 전기, 탄소배출권에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2006년 25억~35억파운드에 달하던 행방불명 무역업자(MTIC) 사기는 2014~2015년 5억~10억파운드로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금지금을 시작해서,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까지 점차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확대되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대리납부제도가 포함되어 앞으로 B2C 거래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악의적인 탈루를 막고, 폐업·도산으로 인해 체납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통해 VAT Gap이 감소하여 부가가치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통해서 전체 공급대가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고 공급가액만 수령하게 된다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간접세로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아 납세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I. 서론	15
II. 원천징수의 역사	17
1. 영국	17
2. 미국	18
3. 일본	19
4. 우리나라	19
III. 원천징수 개요 및 현황	22
1. 원천징수의 개요	22
가. 원천징수의 정의	22
나. 원천징수의 효과	23
다. 원천징수의 종류	24
라. 원천징수 세율	25
2. 원천징수의 현황	27
가. 원천징수 실적	27
나. 원천징수 이행 현황	28
다. 소득세 신고분과 원천분 증가비율 비교	29
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율 비교	30
마. 총급여 규모에 따른 원천징수 현황	31
바. 신고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35
IV. 주요국의 원천징수	43
1. 미국	43
2. 영국	46

3. 일본	47
4. 호주	49
5. 캐나다	51
6. 인도	53
7. 정리 및 비교	55
가. 용어	55
나. 범위	55
V. 원천징수의 적용 확대 가능성	57
1. 법인세	57
가. 높은 원가율	57
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60
다. 결제수단 간 형평성	60
라. 비용-효익 측면	60
마. 유동성	61
바. 원천징수로 인한 효과가 미미	62
2. 사업소득세	62
3. 부가가치세	68
가. 높은 체납비율과 VAT Gap	68
나. 체납 정리 실적	69
다. 폭탄업체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악의적인 탈루	70
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71
마. 해외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72
VI.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75
1. 제도 소개	75
가. 금지금 등의 매입자납부제도	75
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76

2. 금융결제원을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필요성	77
3. 기대 효과	79
가. 세수 증대	79
나. 납세의식 제고	80
4. 한계점	81
가. 과소보고 문제	81
나. B2B 거래	81
VII. 결론	84
참고문헌	87
국문요약	89
Abstract	92

표목차

〈표 II-1〉 일제 강점기의 원천징수 범위 확대 20

〈표 III-1〉 원천징수 대상 소득 23

〈표 III-2〉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 26

〈표 III-3〉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 실적 27

〈표 III-4〉 소득별 원천징수 이행 현황 28

〈표 III-5〉 원천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와 소득세 29

〈표 III-6〉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지급액 전년 대비 증가비율 30

〈표 III-7〉 총급여 규모별 급여액 대비 기납부세액 비율 32

〈표 III-8〉 총급여 규모별 기납부세액 대비 환급세액 비율 33

〈표 III-9〉 총급여 규모별 결정세액 대비 기납부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비율 35

〈표 IV-1〉 미국의 국세수입 현황 44

〈표 IV-2〉 영국 세금코드 46

〈표 IV-3〉 2014~2015 영국의 Tax Gap 추정치 47

〈표 IV-4〉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 48

〈표 IV-5〉 일본의 국세수입 현황 49

〈표 IV-6〉 일본의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49

〈표 IV-7〉 호주의 원천징수 대상 지급금 50

〈표 IV-8〉 호주의 원천징수 현황 51

〈표 IV-9〉 캐나다의 원천징수 대상 지급금 52

〈표 IV-10〉 캐나다의 국세수입 현황 53

〈표 IV-11〉 인도의 원천징수 대상 54

〈표 IV-12〉 인도의 국세수입 현황 55

〈표 IV-13〉 국가별 거주자의 개인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56

〈표 V-1〉 2015년 체납정리 현황 57

〈표 V-2〉 2015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원가율 59

〈표 V-3〉 2015년 법인의 이자비용과 법인세 비용 61

〈표 V-4〉 원천징수에 따른 매출, 원가, 이익 차이	62
〈표 V-5〉 사업소득 원천징수 변천	64
〈표 V-6〉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67
〈표 V-7〉 2015년 세목별 체납비율	68
〈표 V-8〉 2010년 VAT Gap(생산자가격 기준)	68
〈표 V-9〉 세목별 정리실적 및 미정리 건당 금액 비교(2015년 기준)	69
〈표 V-10〉 영국의 VAT Gap 추정치	73
〈표 V-11〉 EU 국가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품목	74
〈표 VI-1〉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 건수와 이용금액	78
〈표 VI-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시 세수 증대효과 추정	80
〈표 VI-3〉 EU 28개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품목	83

그림목차

[그림 Ⅲ-1] 소득세 신고분 및 원천분 증가비율	30
[그림 Ⅲ-2] 법인세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36
[그림 Ⅲ-3] 소득세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37
[그림 Ⅲ-4] 이자소득 신고 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37
[그림 Ⅲ-5] 배당소득 신고 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38
[그림 Ⅲ-6] 연금소득 신고 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39
[그림 Ⅲ-7] 퇴직소득 신고 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40
[그림 Ⅲ-8] 사업소득 신고 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41
[그림 Ⅲ-9] 근로소득 신고 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42
[그림 Ⅳ-1] W-4 양식과 근로자 정보	43
[그림 Ⅳ-2] 추가 공제와 면제	44
[그림 Ⅳ-3] 정보 보고와 원천징수의 효과	45
[그림 Ⅴ-1] 폭탄업체를 이용한 변칙거래 구조도	70
[그림 Ⅴ-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	71
[그림 Ⅴ-3] 부가가치세(간접세) 거래징수 개념도	72
[그림 Ⅵ-1] 금거래 결제업무 흐름도	75
[그림 Ⅵ-2] 금융결제원을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76
[그림 Ⅵ-3] 대리납부로 인한 기대 효과	79

I. 서론

1803년 프랑스와 나폴레옹 전쟁 중이던 영국은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소득세와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남북전쟁의 전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원천징수를 도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재정이 확대되면서 일본의 원천징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원천징수가 확대되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원천징수제도는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입되고 발전되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연금소득, 기타소득, 일부 사업소득에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세 세수 중 60%가 넘게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전체 소득세의 40%를 넘게 차지한다. 법인세 중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하여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전체 법인세의 25% 가까이 차지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국세청 세수에서 4분의1을 차지한다.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탈루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징수한 세금을 매달 납부하기 때문에 세수를 평탄화하여 계획에 맞게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거래·소득 자료로 활용되어 응능과세원칙을 구현하며 납세와 징세의 편의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원천징수를 활용해서 2015년 기준으로 327만건이 발생하였고 금액으로는 18.7조원이나 되는 세금 탈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도를 참고하여 각 나라별 원천징수 적용 대상을 비교해 보고, 법인세, 소득세, 부

가가치세의 각 세목별로 원천징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원천징수의 역사

1. 영국¹⁾

세계에서 원천징수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영국으로 소득세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1799년 수상이자 재무장관이던 윌리엄 피트(William Pitt)는 프랑스와 나폴레옹 전쟁 중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자 이를 충당할 목적으로 일반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원천징수제도 없이 자발적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납세자들의 고의적인 탈세와 조세회피가 많았으며, 이를 검증할 행정능력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1799년 1천만파운드의 세수를 예상했으나 실제 세수는 600만파운드에 그쳤고, 1800년 700만파운드의 세수를 예상했으나 실제 세수는 600만파운드에도 미치지 못했다. 1801년 예상 세수를 600만파운드로 조정하였음에도 실제 세수는 500만파운드를 밑돌아 실패한 세제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1801년 피트(Pitt)의 자리를 승계한 헨리 애딩턴(Henry Addington)은 1803년 피트(Pitt)의 종합신고형 소득세 대신 소득원천별 분류과세제도와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득원천별 분류과세제도는 소득을 토지·건물 등 부동산 소유소득, 농업소득, 공채이자소득, 상공업·자유업에 의한 소득 및 기타소득, 급여 및 연금소득의 5종으로 분류하여 각 원천별로 징수방법을 달리했다. 여기에 원천징수제도를 추가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차인이, 공채이자소득은 은행이, 급여소득은 급여의 지급자가 소득지급 시에 공제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애딩턴(Addington)은 기존에 1파운드당 2실링(10%)의 세율을 1파운드당 1실링(5%)로 낮추었음에도 징수액이 피트(Pitt)의 소득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크게 성

1) 최원,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포럼』, 2011, pp. 12~16.

공을 거두었다. 분류과세로 인해 세원포착이 용이했고 원천징수로 인해 행정비용이 절감되면서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했기 때문이다.

2. 미국²⁾

미국의 소득세제는 1861년 남북전쟁의 발발과 함께 막대한 전비로 인해 재정수요의 확보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소득세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1862년에 1870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소득세제가 탄생하였다. 철도회사에서 받는 배당과 이자,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및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 소득이 연간 600달러를 넘으면 3%, 10,000달러를 넘으면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 지급 시에 5%를 원천에서 징수했다. 하지만 남북전쟁 종전에 따라 재정수요가 감소하며 예정되었던 기한에서 2년만 연장한 끝에 1872년 폐지되었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자본의 집중에 따라 독점의 폐해가 생겨났고 동북부의 산업자본에 유리한 관세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는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득세법」은 1894년 의회를 통과해서 1895년 초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4,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으며, 회사의 배당과 공무원 보수에 대해 제한적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895년 미국대법원은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판결에서 소득세는 직접세이므로 헌법에 의해 주별 인구비례원칙에 따라 배분되다 보면 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결국 헌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었고 15년에 걸친 헌법 개정운동의 결과로 1909년 “연방의회는 주별 인구비례에 따른 배분이 없어도 소득의 원천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16차 헌법개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였다. 1909년 수정헌법안은 3분의2에 해당하는

2) 김석환, 「미국 소득세제의 기원에 대한 소고」, 『조세법연구』, 2009, pp. 202~212.

주의 인준절차를 거쳐 1913년 정식 발효되었고 모든 순소득에 대해 1~6%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가 곧바로 시행되었다. 1943년 남북전쟁 이후 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일본³⁾

일본은 1887년 소득세를 제정했지만 원천징수제도는 함께 도입되지 않았다. 1899년 소득을 제1종 법인세법, 제2종 공사채의 이자, 제3종 개인소득으로 나누면서 제2종 공사채의 이자에 대해 2%로 원천징수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불황과 민주사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급격히 재정이 확대되면서 소득세제가 강화되었다. 1940년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두 제도를 채용하였다. 분류소득세는 소득을 부동산소득,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산림소득 및 퇴직소득의 6종류로 나누어 각자 다른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는 각종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원천징수제도도 확대되어 배당이자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7년 정산을 전제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라는 용어의 사용과 연말조정 개념이 도입되었다.

4. 우리나라

1927년 4월에 제정된 「조선자본이자세령」은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에 대해서 2%의 자본이자세를 부과하였다. 지불자는 금액 지불 시 자본이자세를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 원천징수제도의 시초로 본다. 1934년 「조선소득세령」으로 개정되면서 조선에서 지불을 받은 공채·사채·조선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대부신탁

3) 최원,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포럼』, 2011, pp. 15~16.

의 이익과 조선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자의 배당, 이익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제2종 소득으로 규정하고 금액 지불 시 지불자가 그 소득세를 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태평양 전쟁에 대한 전비 조달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1938년에는 제2종 소득에 조선에서 지불받은 일시은급 또는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추가였다. 1945년에는 제2종 소득에 개인이 조선에서 지급받은 보수 또는 요금과 개인의 주식청산거래로 인한 소득을 추가하여 원천징수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다.

〈표 II-1〉 일제 강점기의 원천징수 범위 확대

연도	법률	내용
1927년	조선자본이자세령	조선에서 지불받는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
1934년	조선소득세령	갑: 조선에서 지불을 받은 공채·사채·조선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은행저축예금·금융조합예금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을: 조선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자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1938년		병: 조선에서 지불받은 일시은급 또는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1945년		정: 개인이 조선에서 지급받은 보수 또는 요금으로서 조선총독이 정한 소득 무: 개인의 주식청산거래로 인한 소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선소득세령」.

정부수립 이후 「소득세법」이 정비되면서 원천징수도 점차 확대되어갔다. 1949년 「소득세법」이 제정되면서 특별소득⁴⁾에 대해서는 지불자가 소득세를

4) 제1종 갑.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과 퇴직급여 및 기타 일반 퇴직급여.
을. 비영업대금이자 및 일시소득.
제2종 갑.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이거나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 및 어업조합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을.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1951년 「조세특례법」을 통해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임금, 보수, 비용변상,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지불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시작되었다. 이후 1945년 영업세, 1960년 법인세, 1975년 방위세, 1982년 교육세, 1994년 농어촌특별세 까지 원천징수가 실시되었다.

Ⅲ. 원천징수 개요 및 현황

1. 원천징수의 개요

가. 원천징수의 정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따라 다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거주자는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내국법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므로 거주자에 비해서 범위가 매우 좁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므로 비거주자와 동일하다.

〈표 III-1〉 원천징수 대상 소득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소득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 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나. 원천징수의 효과

1) 탈루 방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이후에 정산을 통해 평균적으로 원천징수액의 10%를 환급한다. 따라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탈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 영국의 택스 갭(Tax Gap) 자료에 따르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Tax Gap이 1.1%에 불과하고, 미국의 Tax Gap 자료에 따르면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는 Tax Gap이 1%에 불과해서 원천징수는 탈루 방지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2) 세수 평탄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여 세수를 평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원천징수가 없다면 대부분의 법인세는 3~5월과 8~10월, 종합소득세는 5~7월 사이에만 납부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일정하므로 국세청 세수의 50%에 달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일정 기간에만 징수할 수 있다면 재정지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의 60%, 법인세의 25% 정도를 원천징수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세수를 평탄화하여 재정지출을 계획에 맞게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거래·소득 자료의 확보

원천징수를 통해 거래와 소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이 확보하게 됨으로써 응능과세원칙 구현에 기여한다. 거래자료와 소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신고내역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해서 축소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업소득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서 세원관리가 취약한 업종으로 원천징수가 없다면 소득이나 거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4) 납세와 징세의 편의

근로소득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원천징수로 납세의 무가 종결되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자와,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 무가 종결된다.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면 납세협력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1년치 세금을 매월 나눠서 부담하므로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원천납세의무자에 비해 세금계산 및 납부능력이 뛰어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게 되면 세액검증 및 체납에 따른 추심업무가 상당히 경감되며 조세저항도 적어진다.

다. 원천징수의 종류⁵⁾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 종합적 원천징수로 구분된다.

5)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1)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여기에는 당연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 등이 있다.

2)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각 소득 등의 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한 후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소득금액, 법인의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의 이익 등이 있다.

3) 종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먼저 예납적 원천징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시 연간소득에 대하여 과세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후 그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사업·연금소득이 종합적 원천징수에 해당된다.

라. 원천징수 세율

기본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배당소득 14%, 근로·연금·퇴직소득 기본세율, 기타소득 20%다. 이자·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30%,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실지명익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38%,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은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제1항 제5호의 의료보건의용역과 제1항 제15호의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3%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연금·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과 연

금소득을 매달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6%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이 20%지만,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은 30%, 연금계좌에서 연금의 수령하는 경우 15%를 원천징수한다.

〈표 III-2〉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고	
개인	이자	분리과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거래실명제법」 제5조 적용	90%		
	그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고배당기업의 금전 배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거래실명제법」 제5조 적용	90%		
		그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frac{\text{이연퇴직소득세}}{\text{이연퇴직소득}} \times 70\%$		
		퇴직연금·사적연금	3~5%		
복권당첨금		20%	3억원 초과 30%		
기타	연금계좌의 연금의 수령	15%			
	기타소득	20%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법인	이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 외	14%		
	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14%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2. 원천징수의 현황

가. 원천징수 실적

소득세의 60%와 법인세의 20% 정도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국세청 세수에서 25%가량을 차지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세의 40%가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리 인하의 여파로 인해 이자소득세의 금액과 비율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표 III-3〉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소득세	624,398	541,017	483,834	463,834	426,902
- 신고분	253,030 (38.3)	195,335 (36.1)	175,585 (36.3)	173,930 (37.5)	156,893 (36.8)
종합소득세	134,469 (21.5)	114,861 (21.2)	109,014 (22.5)	99,379 (21.4)	82,999 (19.4)
양도소득세	118,561 (18.3)	80,474 (14.9)	66,571 (13.8)	74,552 (16.1)	73,894 (17.3)
- 원천분	371,367 (61.7)	345,682 (63.9)	308,249 (63.7)	289,904 (62.5)	270,009 (63.2)
이자소득세	25,189 (4.0)	28,913 (5.3)	32,678 (6.8)	35,141 (7.6)	32,144 (7.5)
배당소득세	20,420 (3.3)	17,366 (3.2)	16,208 (3.3)	16,377 (3.5)	16,812 (3.9)
사업소득세	21,091 (3.4)	19,210 (3.6)	17,983 (3.7)	17,449 (3.8)	16,519 (3.9)
근로소득세	281,095 (45.0)	261,356 (48.3)	224,944 (46.5)	202,435 (43.6)	188,002 (44.0)
기타소득세	12,243 (2.0)	10,440 (1.9)	10,609 (2.2)	9,808 (2.1)	9,080 (2.1)
연금소득세	368 (0.6)	182 (0.0)	101 (0.0)	58 (0.0)	24 (0.0)
퇴직소득세	10,962 (1.8)	8,216 (1.5)	5,726 (1.2)	8,636 (1.9)	7,428 (1.7)
법인세	450,295	426,503	438,548	459,318	448,728
- 신고분	327,127 (72.6)	304,783 (71.5)	316,786 (72.2)	344,157 (74.9)	343,387 (76.5)
- 원천분	123,168 (27.4)	121,721 (28.5)	121,762 (27.8)	115,160 (25.1)	105,342 (23.5)

주: () 안은 비중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원천징수 이행 현황

소득별 원천징수 이행 현황은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며, 원천징수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 세액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지급액 대비 원천징수 세액은 2% 정도에 불과하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20%,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14%로 높은 편이라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은 다른 소득에 비해 높다.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수령 등으로 연금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유도하며 연금소득의 과세수준을 낮춘 결과, 연금소득은 소득의 0.1% 정도를 원천징수하여 가장 낮았다.

〈표 III-4〉 소득별 원천징수 이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근로소득	소득지급액	1,368,245,776	1,099,127,780	1,053,038,173	954,699,594
	원천징수세액	26,478,637	25,750,479	22,157,856	19,800,665
	비율	1.9%	2.3%	2.1%	2.1%
퇴직소득	소득지급액	38,556,172	34,775,871	25,293,550	31,064,340
	원천징수세액	1,063,998	880,914	621,884	926,743
	비율	2.8%	2.5%	2.5%	3.0%
사업소득	소득지급액	84,448,408	79,137,817	75,070,935	70,375,306
	원천징수세액	1,963,258	1,894,813	1,778,600	1,641,702
	비율	2.3%	2.4%	2.4%	2.3%
기타소득	소득지급액	12,112,141	10,599,242	9,761,429	9,273,217
	원천징수세액	1,235,590	1,078,729	1,079,112	1,013,150
	비율	10.2%	10.2%	11.1%	10.9%
연금소득	소득지급액	21,136,611	31,476,900	7,236,214	6,259,566
	원천징수세액	25,555	19,025	10,019	6,367
	비율	0.1%	0.1%	0.1%	0.1%
이자소득	소득지급액	29,690,300	30,585,779	36,102,423	38,882,549
	원천징수세액	2,860,566	2,933,732	3,275,618	3,572,194
	비율	9.6%	9.6%	9.1%	9.2%
배당소득	소득지급액	17,637,465	14,886,319	13,999,184	14,980,895
	원천징수세액	2,068,001	1,765,695	1,635,512	1,632,991
	비율	11.7%	11.9%	11.7%	10.9%
법인원천	소득지급액	152,683,774	150,046,553	134,859,904	135,694,051
	원천징수세액	12,378,487	11,981,915	11,486,059	11,473,251
	비율	8.1%	8.0%	8.5%	8.5%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2014년 1,157만건, 2015년 1,281만건이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건수 중에 60%는 매월 이루어지는 간이세액공제가 차지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는 20%보다 조금 낮았고, 중도퇴사자와 연말정산자가 각각 10%에 약간 못 미쳤다.

일용근로소득은 신고건수에서는 20%에 조금 못 미쳤지만 근로소득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로 매우 미미했다. 매달 징수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실제 소득세 세수에 비해 2014년은 8.9%, 2015년은 17.7%를 더 징수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금액을 환급했다.

〈표 III-5〉 원천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와 소득세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신고건수	소득세	신고건수	소득세	
근로소득	합계	11,573,218	25,750,479	12,811,375	26,478,637
	간이세액	7,267,883 (62.8)	28,052,437 (108.9)	8,268,504 (64.5)	31,173,953 (117.7)
	중도퇴사	1,120,360 (9.7)	-276,612 (-1.1)	1,287,146 (10.0)	-364,998 (-1.4)
	일용근로	2,165,250 (18.7)	242,233 (0.9)	2,457,596 (19.2)	286,095 (1.1)
	연말정산	1,019,725 (8.8)	-2,267,581 (-8.8)	798,129 (6.2)	-4,616,413 (-17.4)

주: ()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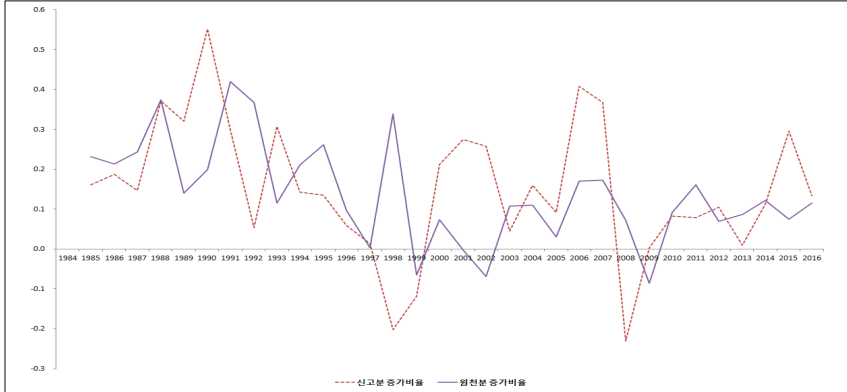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소득세 신고분과 원천분 증가비율 비교

소득세 신고분과 원천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다. 다만, 신고분 증가비율은 분산이 0.028이고 원천분 증가비율의 분산은 0.015로, 신고분의 경우 증감이 일정하지 않았고 원천분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증가비율의 평균은 신고분이 15.1%, 원천분이 13.9%로 오히려 신고분이 높았는데, 몇 차례 원천징수 세율의 하락이 원인이므로 보인다.

[그림 III-1] 소득세 신고분 및 원천분 증가비율

(단위: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율 비교

국세청에 보고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지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비율을 비교한 결과 평균도 비슷하고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업소득 특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높은 탈루 비율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분배, 경기적 특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된 문제이므로 단순히 해당 자료를 통해 원천징수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III-6>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지급액 전년 대비 증가비율

(단위: %)

연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지급액
평균	9.7	9.6
2007	11.4	16.0
2008	10.1	3.1
2009	6.1	3.8
2010	10.2	5.9
2011	12.5	8.3
2012	4.4	10.2
2013	6.3	10.3
2014	12.9	4.4
2015	13.4	24.5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마. 총급여 규모에 따른 원천징수 현황

1) 급여 대비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비율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정해진다. 2017년 기준으로 월급여 10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105만원을 초과하고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0.1~15.6%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월급여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인 35%, 38%, 4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총소득금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비율(기납부세액 비율)이 증가한다. 총급여 1,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급여의 0.5%를 원천징수했지만 총급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1.7%를 원천징수했다. 총급여 2억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부분 간이세액표의 적용을 받으므로 간이세액표 기준 최대 원천징수비율인 15.6%보다 낮은 비율을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총급여 2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급여 대비 원천징수비율이 2억~3억 원은 21.6%, 3억~5억원은 25.5%, 5억~10억원은 28.7%, 10억원 초과는 31.7%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표 III-7〉 총급여 규모별 급여액 대비 기납부세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총급여 규모별	급여 총계(A)	기납부세액(B)	비율(B/A)
합계	562,509,592	31,461,185	5.6
~ 1,000만원	17,610,432	83,402	0.5
1,000만~ 1,500만원	26,408,912	127,468	0.5
1,500만~ 2,000만원	34,293,917	229,341	0.7
2,000만~ 3,000만원	72,192,247	806,260	1.1
3,000만~ 4,000만원	66,974,893	1,407,716	2.1
4,000만~ 4,500만원	31,304,094	942,981	3.0
4,500만~ 5,000만원	29,519,265	1,072,265	3.6
5,000만~ 6,000만원	54,220,005	2,419,112	4.5
6,000만~ 8,000만원	90,015,468	5,384,068	6.0
8,000만~ 1억원	50,589,315	4,368,355	8.6
1억~ 2억원	66,502,912	8,790,457	13.2
2억~ 3억원	8,997,459	1,946,484	21.6
3억~ 5억원	6,398,405	1,632,604	25.5
5억~ 10억원	4,043,949	1,160,918	28.7
10억원 초과	3,438,319	1,089,756	31.7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기납부세액 중 환급되는 비율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부액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과 차이를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중에서 17.1%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되었고, 환급되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았다. 총급여 1,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으므로,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모두 환급받았고, 1,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도 98.3%를 환급받았다. 환급 비율은 점점 낮아져 총급여 10억원 이하의 근로자는 납부한 세액 중 1.8%만을 환급받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만 있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졌다. 따라서 필수적용 항목 이외에 소득·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특별 소득공제 적용 비율이 간이세액표에서 적용되는 비율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총급여 1,000만원 이하는 100%, 1,000만~1,500만원도 98%, 1,500만~2,000만원은 75%, 2,000만~3,000만원은 60.8%로 납부한 세액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는다. 총급여 1억~2억원 8.2%, 2억~3억원 3.9%, 3억~5억원 3.3%, 5억~10억원 2.6%, 10억원 초과 1.8%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환급 비율은 크게 차이난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볼릴 정도로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긴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에게 이익은 없다. 따라서 총급여 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환급 비율이 총급여 수준이 높은 근로자에 비해 너무 높은 점은 문제가 있다.

〈표 III-8〉 총급여 규모별 기납부세액 대비 환급세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총급여 규모별	기납부세액(A)	환급세액(B)	비율(B/A)
합계	31,461,185	5,390,964	17.1
~ 1,000만원	83,402	83,371	100.0
1,000만 ~ 1,500만원	127,468	125,333	98.3
1,500만 ~ 2,000만원	229,341	173,911	75.8
2,000만 ~ 3,000만원	806,260	490,526	60.8
3,000만 ~ 4,000만원	1,407,716	708,879	50.4
4,000만 ~ 4,500만원	942,981	380,067	40.3
4,500만 ~ 5,000만원	1,072,265	372,779	34.8
5,000만 ~ 6,000만원	2,419,112	653,775	27.0
6,000만 ~ 8,000만원	5,384,068	989,642	18.4
8,000만 ~ 1억원	4,368,355	510,825	11.7
1억 ~ 2억원	8,790,457	720,988	8.2
2억 ~ 3억원	1,946,484	76,496	3.9
3억 ~ 5억원	1,632,604	54,024	3.3
5억 ~ 10억원	1,160,918	30,618	2.6
10억원 초과	1,089,756	19,730	1.8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추가납부할 세액 비율

결정세액 대비 기납부세액을 보면 환급세액에서도 확인했듯이,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실제 소득세 부담에 비해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월급여 10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총급여 1,26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액이 없으나, 중도입사자나 퇴사자가 있어 1,500만원 이하에서는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총급여 2,000만~4,000만원 구간에서도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 비해 원천징수액이 2~4배이므로 낮은 소득구간은 실질 소득세부담에 비해 원천징수액이 과도하다. 총급여 5,000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차이가 -5~25%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

특이한 사실은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결정세액 대비 추가납부세액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간이세액표에서 고려하는 특별소득·세액공제의 기본비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소득·세액 공제를 받는 인원이 많아 동일한 급여 규모 수준에서도 공제 수준에 따라 세액부담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표 III-9〉 총급여 규모별 결정세액 대비 기납부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총급여 규모별	결정세액 (A)	기납부세액 (B)	비율 (B/A)	추가납부세액 (C)	비율 (C/A)
합계	28,252,845	31,461,185	111.4	2,182,247	7.7
~ 1,000만원	56	83,402	148868.2	21	36.8
1,000만~1,500만원	2,911	127,468	4379.4	766	26.3
1,500만~2,000만원	65,788	229,341	348.6	10,341	15.7
2,000만~3,000만원	363,956	806,260	221.5	48,206	13.2
3,000만~4,000만원	826,004	1,407,716	170.4	127,149	15.4
4,000만~4,500만원	647,172	942,981	145.7	84,253	13.0
4,500만~5,000만원	783,463	1,072,265	136.9	83,975	10.7
5,000만~6,000만원	1,932,850	2,419,112	125.2	167,496	8.7
6,000만~8,000만원	4,733,780	5,384,068	113.7	339,289	7.2
8,000만~1억원	4,145,759	4,368,355	105.4	288,202	7.0
1억~2억원	8,609,314	8,790,457	102.1	539,689	6.3
2억~3억원	2,055,273	1,946,484	94.7	185,248	9.0
3억~5억원	1,713,699	1,632,604	95.3	135,118	7.9
5억~10억원	1,218,814	1,160,918	95.2	88,515	7.3
10억원 초과	1,154,007	1,089,756	94.4	83,982	7.3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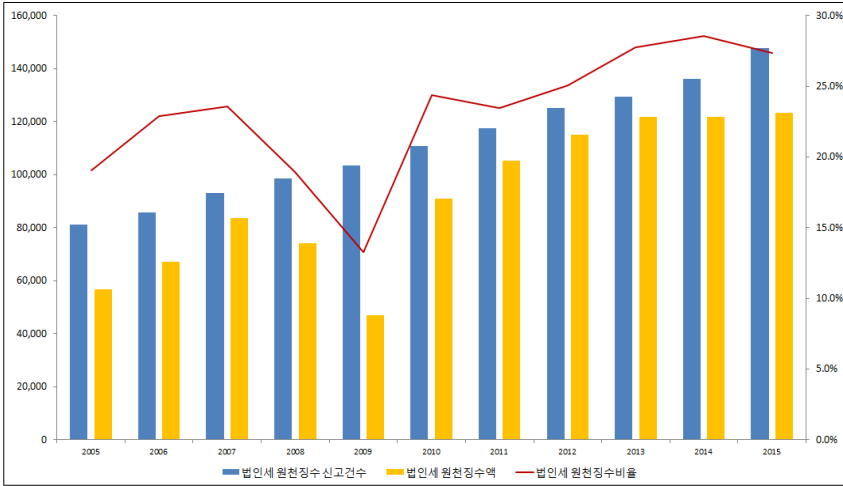
바. 신고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1) 법인세

법인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14%(비영업대금은 25%)를 원천징수한다. 해당되는 법인세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2005년 8.1만건에서 2015년 14.8만건으로 82.7% 증가하였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2005년 5.7조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 12.3조원으로 2배 넘게 상승하였다. 법인세 중 원천징수비율은 2008년과 2009년에 급격하게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20% 중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림 III-2] 법인세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단위: 건, 억원,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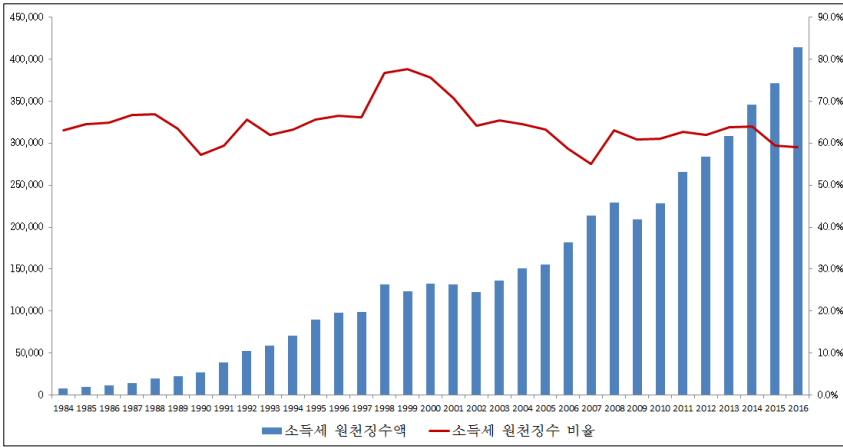
2) 소득세

가) 총괄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소득세 원천징수비율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70%를 넘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50%대에 머물렀지만, 대체적으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소득세 금액은 1984년 7,800억원에서 2016년 41.4조 원으로 53배가 증가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치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

[그림 III-3] 소득세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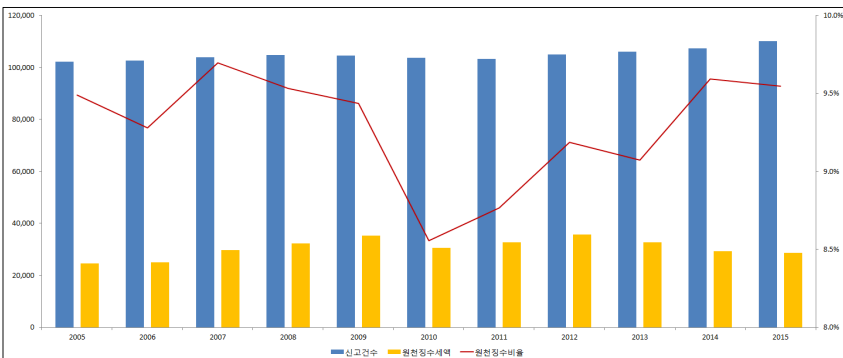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이자소득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2005년 10만 2천건에서 2015년 11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액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3조원을 넘었으나 금리 감소로 인해 2015년 2.86조원 정도이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비율은 14%(비영업대금 25%)지만 비과세 이자소득도 존재하므로 이자소득 지급액의 대략 9% 내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림 III-4] 이자소득 신고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단위: 건,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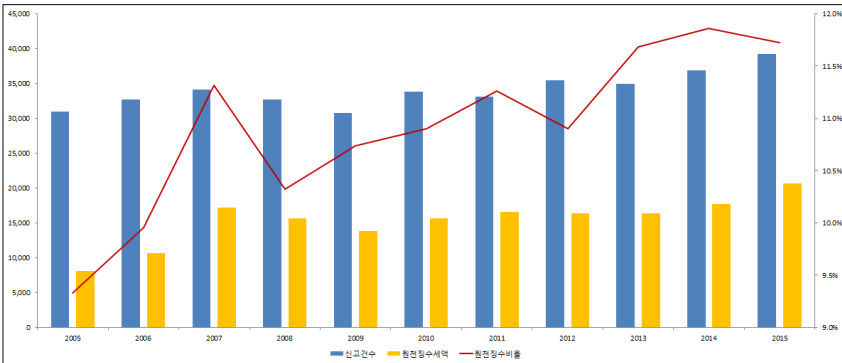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2005년 3만 1천건에서 2015년 3만 9천건으로 26%가량 증가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비율은 14%지만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항목들도 존재하여 1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2005년 9.3%에서 2015년 11.7%로 크게 증가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은 배당소득 지급액과 원천징수비율의 증가가 겹쳐 2005년 8천억원에서 2015년 2조원으로 2.6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III-5] 배당소득 신고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단위: 건,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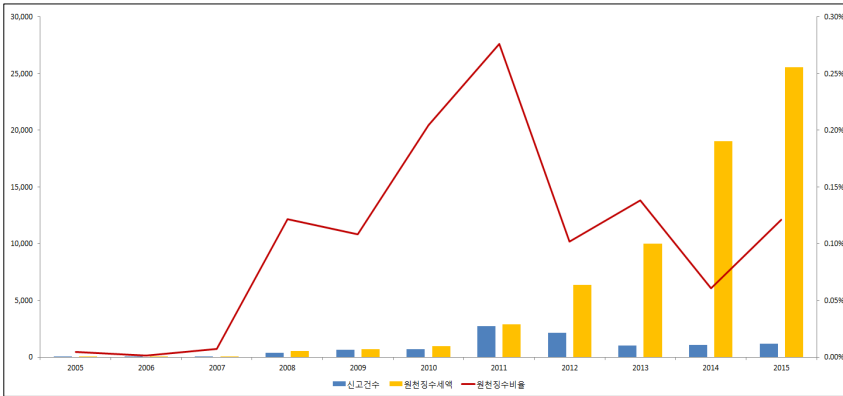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라) 연금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2005년 23건에서 2015년 1,191건으로 52배 증가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연금을 통한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인 결과 2011년 0.3%까지 높아졌던 연금소득 원천징수비율은 2015년 0.1% 수준으로 하락해서 소득세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원천징수비율을 보인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비율은 매우 낮지만 연금소득 지급액이 2005년 460억원에서 2015년 21조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면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액도 2005년 200만원에서 2015년 25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II-6] 연금소득 신고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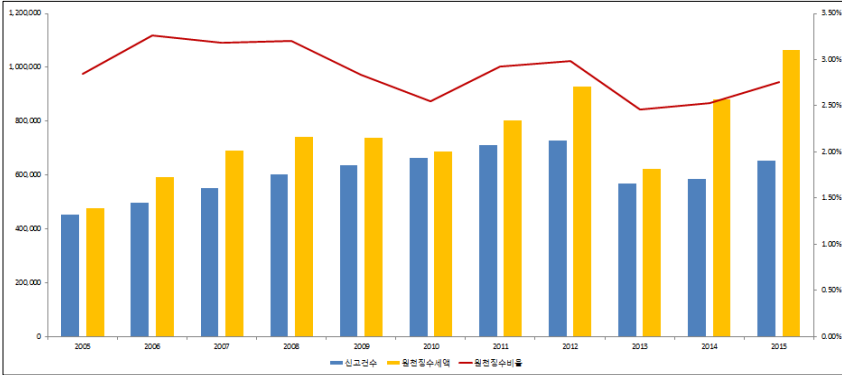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마) 퇴직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2005년 45만건에서 2015년 65만건으로 44% 정도 증가했다. 기본세율로 과세하나 퇴직소득은 여러 기간에 걸쳐 누적된 금액이므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비율은 3%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소득의 과세수준을 낮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2013년 신고건수와 원천징수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후 퇴직금 총지급액이 증가하고 퇴직소득의 환산급여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액은 2015년 1조원을 넘었다.

[그림 III-7] 퇴직소득 신고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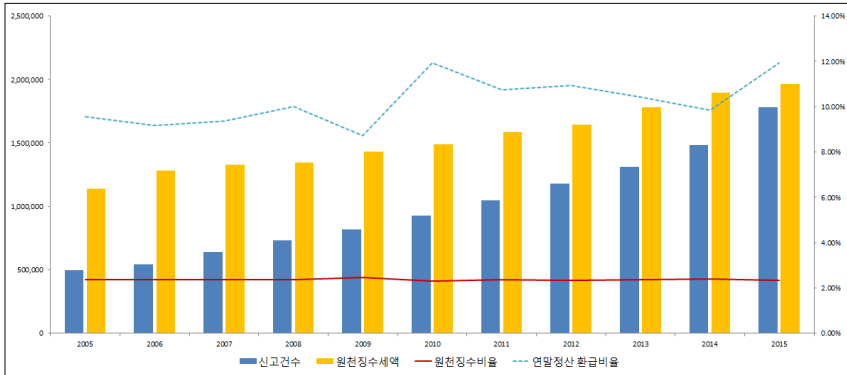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를 원천징수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환급한 이후에는 매년 2.3~2.4%의 일정한 원천징수율을 보인다.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거둔 사업소득 원천징수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하는 비율은 2005년 9.6%에서 2015년 11.9%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연말정산 파동’ 이후 비과세·공제의 혜택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2005년 50만건에서 2015년 178만건으로 3.58배 증가했다.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증가액은 그에 미치지 못해 2005년 1.14조원에서 2015년 1.96조원으로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림 III-8] 사업소득 신고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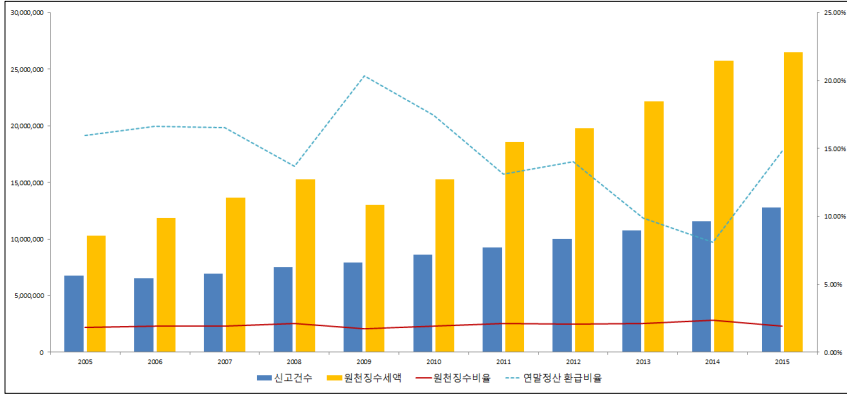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사)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통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월급여액 10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 수준에 따라 월급여액의 0.1~15.6%를 하여 평균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액의 2%가량을 원천징수한다.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거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15% 수준이지만 매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증감의 폭이 큰 편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건수는 2005년 680만건에서 2015년 1,280만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 총지급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2005년 10.3조원에서 2015년 26.5조원으로 1.57배 증가하였다.

[그림 III-9] 근로소득 신고건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비율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IV. 주요국의 원천징수

1. 미국

미국은 월급, 팁, 복리후생, 병가 중 급여, 연금, 복권당첨금, 실업수당, 연방 지불금, 일부의 이자·배당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이외에 자영업에서 발생한 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와 배당소득, 임대료 및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추정세(estimated tax)를 납부한다. 하지만 추정세는 본인이 신고하여 납부한다는 점에서 원천징수라기보다는 중간예납과 유사하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규모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W-4 양식에 작성한다. 아래 [그림 IV-1]에서 볼 수 있듯이 W-4 양식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한다. 추가적으로 배우자의 근로 여부, 가장인지 여부, 직업의 개수, 자녀세액공제 해당 여부 등을 기입하도록 하여 숫자가 클수록 더 낮은 원천징수액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만 반영하므로 미국이 조금 더 세부적이다.

[그림 IV-1] W-4 양식과 근로자 정보

Personal Allowances Worksheet (Keep for your records.)	
A	Enter "1" for yourself if no one els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A
B	Enter "1" i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re single and have only one job; or • You're married, have only one job, and your spouse doesn't work; or • Your wages from a second job or your spouse's wages (or the total of both) are \$1,500 or less. B
C	Enter "1" for your spouse. But, you may choose to enter "-0-" if you are married and have either a working spouse or more than one job. (Entering "-0-" may help you avoid having too little tax withheld.) C
D	Enter number of dependents (other than your spouse or yourself) you will claim on your tax return D
E	Enter "1" if you will file as head of household on your tax return (see conditions under Head of household above) E
F	Enter "1" if you have at least \$2,000 of child or dependent care expenses for which you plan to claim a credit (Note: Do not include child support payments. See Pub. 503,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for details.) F
G	Child Tax Credit (including additional child tax credit). See Pub. 972, Child Tax Credit, for more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your total income will be less than \$70,000 (\$100,000 if married), enter "2" for each eligible child; then less "1" if you have two to four eligible children or less "2" if you have five or more eligible children. • If your total income will be between \$70,000 and \$84,000 (\$100,000 and \$119,000 if married), enter "1" for each eligible child. G
H	Add lines A through G and enter total here. (Note: This may be different from the number of exemptions you claim on your tax return.) ► H

출처: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Data Book, 2016.

하지만 원천징수액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그림 IV-2]의 3항과 같이 결혼을 했더라도 높은 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6항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적으로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 소득세 부담이 없었고 올해도 소득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림 IV-2] 추가 공제와 면제

Home address (number and street or rural route)		3 <input type="checkbox"/> Single <input type="checkbox"/> Married <input type="checkbox"/> Married, but withheld at higher Single rate.	
City or town, state, and ZIP code		Note: If married, but legally separated, or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check the "Single" box.	
		4 If your last name differs from that shown on your social security card, check here. You must call 1-800-772-1213 for a replacement card. <input type="checkbox"/>	
5	Total number of allowances you are claiming (from line H above or from the applicable worksheet on page 2)	5	
6	Additional amount, if any, you want withheld from each paycheck	6	\$
7	I claim exemption from withholding for 2017, and I certify that I meet bot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exemption. • Last year I had a right to a refund of all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ecause I had no tax liability, and • This year I expect a refund of all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ecause I expect to have no tax liability. If you meet both conditions, write "Exempt" here.	7	

출처: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Data Book, 2016.

미국의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징수액 3.33조달러 중에서 소득세가 1.82조달러로 54%를 차지한다. 그리고 소득세 징수액 1.82조달러 중에서 1.27조달러인 70%를 원천징수하였다. 원천징수액은 전체 국세수입에서 38%를 차지한다. 신고납부는 30%를 차지해서 우리나라의 36%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었다.

<표 IV-1> 미국의 국세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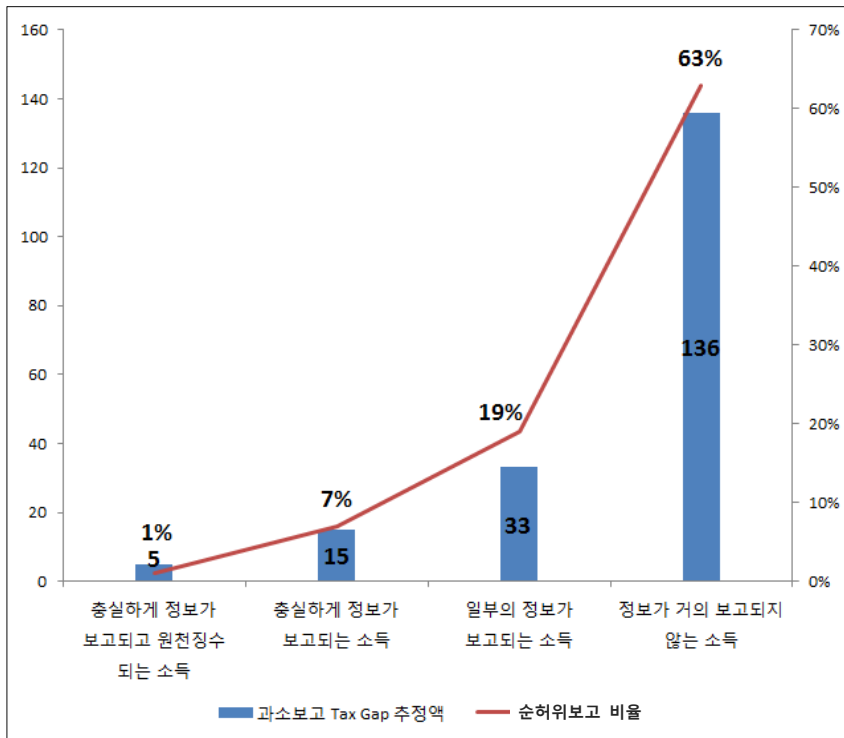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구분	징수액 기준		2016년 환급액 (B)	2016년 순징수액 (A-B)
	2015년	2016년 (A)		
법인세	389,888,722	345,552,427	51,281,426	294,271,001
소득세	1,793,185,699	1,815,819,135		
- 원천징수분	1,241,160,788 (69%)	1,267,429,873 (70%)	369,234,470	1,446,584,665
- 신고납부분	518,579,529 (29%)	518,693,865 (28%)		
- 유산 및 상속 신탁기금 소득	33,445,382 (2%)	29,695,397 (2%)	2,588,937	27,106,460
고용세	1,022,358,916	1,073,907,715	3,329,627	1,070,578,088
상속증여세	20,042,039	22,337,137	999,980	21,337,157
소비세	77,201,882	75,832,669	1,300,563	74,532,106
총계	3,302,677,258	3,333,449,083	426,146,066	2,907,303,017

출처: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Data Book, 2016.

2016년 미국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소득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고 원천징수가 될수록 허위보고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실하게 정보가 보고되고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은 허위보고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만 충실하게 보고되는 소득은 허위보고 비율이 7%, 일부의 정보가 보고되는 소득은 19%, 정보가 거의 보고되지 않는 소득은 63%로 정보의 보고 여부와 원천징수에 따라서 허위보고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V-3] 정보 보고와 원천징수의 효과



출처: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Gap Estimates for Tax Years 2008-2010, 2016. 4.

2. 영국

영국의 고용주는 질병수당, 출산 및 육아수당 등 근로에 대한 대가나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과세나 환급을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유사하고 종합적 원천징수의 개념을 보인다.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세액 공제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세금코드에 따른 소득자의 정보로 공제액과 원천징수액이 결정된다. 영국의 PAYE는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차이를 보이고 정산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체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표 IV-2〉 영국 세금코드

코드	의미
L	개인공제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근로자
M	결혼공제: 배우자 개인 공제의 10%를 이전 받는 근로자
N	결혼공제: 배우자에게 자신의 개인공제 10%를 이전한 근로자
S	스코틀랜드의 세율로 계산하는 근로자
T	개인공제를 수행하는 데 다른 계산방법이 필요한 경우
OT	개인공제가 없거나, 새로 직업을 가졌거나, 고용주가 세금코드 정보가 없는 경우
BR	Basic rate로 과세되는 근로자나 연금수령자
D0	Higher rate로 과세되는 근로자나 연금수령자
D1	Additional rate로 과세되는 근로자나 연금수령자
NT	관련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출처: 영국 국세청, www.gov.uk/tax-codes.

2016년 영국의 국세청이 발표한 2014-15 영국의 Tax Gap 추정치를 보면, Tax Gap은 PAYE, 대기업,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개인 순서대로 점점 높아졌다. PAYE가 적용되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은 Tax Gap이 1.1%로 다른 어떤 세목보다도 낮아 탈루를 방지하는 원천징수의 효과가 잘 드러난다. 특히 개인에게 부과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고 신고납부가 적용되

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은 Tax Gap이 19.2%로 원천징수 항목의 Tax Gap 1.1%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 Tax Gap 발표 자료에서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Tax Gap이 1%로 추정되므로, 국가별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의 Tax Gap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2014~2015 영국의 Tax Gap 추정치

구분		Tax Gap 비율	
소득세 사회보장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9.2%	5.2%
	PAYE	1.1%	
부가가치세		10.3%	
법인세	중소기업	9.5%	7.6%
	대기업	5.8%	
특별소비세		5.3%	
기타		4%	

출처: HMRC, *Measuring tax gaps 2016*, 2016. 9.

3.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원천징수 소득별로 다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15.31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작가, 변호사, 회계사, 프로선수, 연예인 등 고소득 직군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세율도 100만엔 이하는 10.21%, 100만엔 초과는 20.42%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때는 3%의 원천징수를 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일본은 법무사, 공인중개사와 더불어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10.21%를

원천징수해서, 노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폭 줄여서 퇴직소득 등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표 IV-4〉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이자소득(분리과세 대상)		15.315%
배당소득		15.315%(or 20.42%)
할인채권 상환 이익(분리과세 대상)		18.378%(or 16.336%)
원천징수 계좌에 대한 배당 등		15.315%
특별계좌에서 보유하는 상장주식 자본이득		15.3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퇴직소득	신고서 제출	간이세액표
	신고서 미제출	20.42%
작가, 변호사, 회계사, 프로선수, 계약금, 연예인		100만엔 이하 : 10.21%
		100만엔 초과 : 20.42%
법무사, 공인중개사, 치료보수, 연금소득 등		10.21%

출처: National Tax Agency, *The 141th National Tax Agency Annual Statistics Report*, 2016.

일본의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은 83%로 우리나라의 64%나 미국의 70%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소득세의 비중이 낮아 원천징수세액이 일반회계분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높지 않다. 원천징수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57%, 배당소득이 26%로 대다수를 차지해서, 근로소득이 75%, 이자소득이 6.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표 IV-5〉 일본의 국세수입 현황

(단위: 백만엔)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득세	15,530,813	16,790,227	17,807,137
—원천소득세	12,759,155 (82%)	14,026,721 (84%)	14,773,154 (83%)
—신고소득세	2,771,658 (18%)	2,763,507 (16%)	3,033,983 (17%)
법인세	10,493,718	11,031,608	10,827,403
소비세	10,829,301	16,028,958	17,426,292
취발류세	2,574,263	2,486,350	2,464,555
일반회계분 계	46,952,947	53,970,700	56,285,403

출처: National Tax Agency, *The 141th National Tax Agency Annual Statistics Report*, 2016.

〈표 IV-6〉 일본의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단위: 억엔, %)

연도	근로소득	배당소득	보수·요금 등	이자소득	기타	합계	증감률
2010	85,013	16,411	11,508	5,482	5,619	124,032	-1.5%
2011	90,064	16,701	11,511	4,679	5,522	128,477	3.6%
2012	89,801	18,273	11,548	4,318	5,490	129,430	0.7%
2013	93,530	25,769	11,737	4,391	10,834	146,260	13.0%
2014	97,811	38,214	11,698	4,807	11,541	164,070	12.0%
2015	101,736 (57%)	45,917 (26%)	11,864 (7%)	4,302 (2%)	14,423 (8%)	178,243	8.6%

출처: National Tax Agency, *The 141th National Tax Agency Annual Statistics Report*, 2016.

4. 호주

호주는 아래의 26가지 원천징수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근로에 대한 대가와 사회보험, 연금, 퇴직, 이자와 배당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의 범위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다.

〈표 IV-7〉 호주의 원천징수 대상 지급금

항목	원천징수 대상
1	급여
2	회사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3	사무실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3A	종교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4	개인에게 지급되는 회사 복귀 소득
5	자발적인 동의를 있는 지불
6	고용계약이나 규정에 따른 지불
7	퇴직금 또는 연금
8	연금 일시금 또는 고용 종료에 대한 대가
9	연차 보상비
10	사회보장과 유사한 지불
11	교육 또는 훈련비
12	질병 급여
13	수취인이 세금신고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투자소득
14	뮤츠허펀드의 투자자
15	수취인이 ABN을 허용하지 않는 공급에 대한 지불
16	해외거주자에 대한 배당
17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18	해외거주자에 대한 이자
19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20	해외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이자
21	해외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22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23	광산에 대한 지급
24	천연자원에 대한 지급
25	MIT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
26	관리자에 대한 지급액

출처: 호주 법령정보센터, http://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legis/cth/consol_act/taa1953269/sch1.html.

호주 정부의 세수 중에 소득세는 대략 70%를 조금 넘게 차지하고 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소득세의 66%를 차지하고, 전체 세수의 50%를 담당하는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IV-8〉 호주의 원천징수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3~2014		2014~2015		2015~2016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개인	84,499	832	83,181	871	83,624	904
회사	465,311	115,202	474,726	122,761	489,515	127,942
파트너십	76,204	2,445	72,013	2,453	69,097	2,489
조합	170,884	12,101	171,126	12,609	173,251	13,144
펀드	7,928	770	7,725	945	7,324	1,012
정부	3,704	27,719	3,623	29,541	3,578	30,229
원천징수 합계	808,530	159,069	812,394	169,180	826,389	175,720
소득세	-	248,435	-	258,610	-	265,116
비율	-	64%	-	65%	-	66%

출처: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ation-statistics/Taxation-statistics-2014-15/?anchor=Payasyougo#Payasyougo>

5. 캐나다

캐나다는 아래의 19가지 원천징수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근로에 대한 대가와 사회보험, 연금, 퇴직으로 인한 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Part VIII 대상인 연금, 연금보험, 경영자문료,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신탁수익과 영화 또는 비디오에 대한 수익을 원천징수한다.⁶⁾

6) 김재진·이정미·유현영,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9.

〈표 IV-9〉 캐나다의 원천징수 대상 지급금

번호	대상
1	봉급, 임료, 기타 보수
2	연금혜택
3	퇴직수당
4	사망혜택
5	실업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혜택
6	보충적 실업플랜의 혜택
7	완전 또는 부분적 연금대체에 따른 연금 및 지급금
8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수수료 등 기타 지급금
9	이연이익공유플랜에 지급금
10	적격퇴직저축플랜에 따른 지급금
11	소득명준화 연금계약의 포기, 취소 또는 상환에 따른 지급금
12	등록퇴직소득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지급금
13	정부보장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 혜택
14	법정 형식에 따라 원천징수 적용을 선택한 자에 대한 지급금
15	비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에 대한 지급금
16	퇴직보상약정에 관한 지급금
17	연방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기한 사회부조금으로서 수취한 근로소득 보조금
18	등록교육저축플랜에 따른 지급금
19	캐나다 국세청에 정보를 지급하는 계약에 따른 지급금

출처: Government of Canada, "Income Tax Act 153"

원천징수액은 회사가 위치한 주에 따라 다른 세액표에 따라 결정된다. 세액표에 추가적으로 연방 및 지방세, 기본 연방세 공제, 관련 비용 공제, 소득세 신고서에 따라 제출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국제 수입 현황에 따르면 원천징수액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 원천징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개인소득세는 전체 소득세 수입의 74.5%, 전체 조세 수입의 58.8%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10〉 캐나다의 국세수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6~2017	2015~2016
소득세 수입	192,967	192,846
개인소득세	143,680	144,897
법인소득세	42,216	41,444
비거주자	7,071	6,505
기타조세 및 관세수입	51,348	49,805
부가가치세	34,368	32,952
에너지세	5,634	5,565
관세 및 수입부담금	5,478	5,372
기타 소비세 및 부담금	5,868	5,916
총 조세수입	244,315	242,651

출처: Government of Canada, *Public Account of Canada 2016-2017*, 2017.

6. 인도

인도의 원천징수제도는 Tax Deducted at Source(TDS)로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한다는 의미가 강해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와 뜻이 유사하다. 인도의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급여, 이자, 배당, 연금, 퇴직 등을 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나라들의 원천징수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양도소득과 임대료를 원천징수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모든 양도소득은 아니지만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 중 500만루피(한화 8천만~9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임대료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은 10%, 공장,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2%를 원천징수한다. 양도소득과 임대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로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도의 원천징수제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라 볼 수 있다.

〈표 IV-11〉 인도의 원천징수 대상

(단위: 루피, %)

조문	대상	기준점	세율
192	급여	-	기본세율
193	유가증권이자	10,000	10
194	배당	2,500	10
194A	이자(은행)	10,000	10
	이자(기타)	5,000	10
194B, 194BB	복권, 경마 당첨금	10,000	30
194C	도급금액(단일 계약)	30,000	1
	도급금액(연단위 계약)	100,000	1
194D	보험수수료	15,000	5
194DA	생명보험	100,000	1
194E	비거주 운동선수	-	20
194G	복권 수수료	15,000	5
194H	중개 수수료	15,000	5
194I	임차료(토지, 건물)	180,000	10
	임차료(공장, 기계, 장비)	180,000	2
194IA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	5,000,000	1
194J	전문 수수료, 기술 수수료	30,000	10
	콜센터 직원 지급금	30,000	2
194LA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 보상금	250,000	10
194LB	인프라 채권 펀드에 대한 이자	-	5

출처: 인도 원천징수세율, <http://blog.tdsman.com/2017/04/tds-tcs-rate-chart-fy-2017-18-ay-2018-19/>

인도의 소득세는 2016~2017년 기준으로 직접세의 41%,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 인도의 원천징수액은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징수액보다 조금 더 크다. TDS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2%로 우리나라의 25%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표 IV-12〉 인도의 국세수입 현황

(단위: 천만루피, %)

구분	2016~2017	2015~2016	2014~2015	2013~2014
직접세	849,818	741,945	695,792	638,596
법인세	484,924	453,228	428,925	394,678
개인소득세	349,270	287,637	265,772	242,888
기타	15,624	1,079	1,095	1,030
간접세	861,515	711,885	543,215	495,347
총조세수입	1,711,333	1,454,180	1,239,007	1,133,943
원천징수(TDS)	360,631(21)	315,131(22)	259,106(21)	248,547(22)

주: () 안은 총조세수입에서 원천징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India Income Tax Department, *Time Series Data Financial Year 2000-01 to 2016-17*, 2017.

7. 정리 및 비교

가. 용어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일하게 원천징수, 원천소득세라고 표현하며, 인도는 원천징수(TDS; Tax Deducted at Source)로 모두 소득의 원천에서 미리 징수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원천징수(Withholding tax)로 소득 지급을 보류,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탈루의 방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영국은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호주는 원천징수(PAYG; Pay As You Go)로 버는 만큼 낸다는 측면에서 납세의 편의 측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유사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천징수의 어떠한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볼 수 있다.

나. 범위

우리나라는 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인도도 임대료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원천징수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OECD국가로 범위를 확대해도 프랑스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한다. 하지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과 이자는 70%의 국가, 개인서비스와 로열티 등은 40%의 국가만이 원천징수를 한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있는 나라는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한국, 폴란드, 스페인, 터키 7개 국가에 불과하다.

〈표 IV-13〉 국가별 거주자의 개인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급여	배당	이자	개인서비스	로열티 등	기타
호주	○	×	×	×	×	
오스트리아	○	○	○	×	×	투자소득
벨기에	○	○	○	×	○	
캐나다	○	×	×	×	×	
체코	○	○	○	×	×	
덴마크	○	○	×	×	×	
핀란드	○	×	○	×	×	
프랑스	×	×	×	×	×	
독일	○	○	×	×	×	
그리스	○	×	○	○	○	상금, 임대료, 자본소득 일부
헝가리	○	○	○	○	○	보증증권 이득
아이슬란드	○	○	○	×	×	
아일랜드	○	○	○	○	○	
이탈리아	○	○	○	○	×	
일본	○	○	○	○	○	상금, 경매당첨금
한국	○	○	○	○	○	
룩셈부르크	○	○	×	×	×	
멕시코	○	○	○	○	×	
네덜란드	○	○	×	×	×	
뉴질랜드	○	○	○	○	×	
노르웨이	○	×	×	×	×	
폴란드	○	○	○	○	○	
포르투갈	○	○	○	×	○	상금, 임대료
슬로바키아	○	○	○	×	×	상금, 보험금, 임대료
스페인	○	○	○	○	○	상금, 임대료, 자본소득 일부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	상금, 보험금
터키	○	○	○	○	○	임대료
영국	○	×	○	○	○	임대료
미국	○	×	×	×	×	
비율	93%	73%	70%	40%	37%	

출처: OECD, *Tax Administration in OECD Countries*, 2004.

V. 원천징수의 적용 확대 가능성

1. 법인세

2015년 체납정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7조원의 체납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 법인세 체납건수는 2%밖에 되지 않지만 체납발생금액은 8%를 차지하여, 건당 체납금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 크다. 하지만 현금정리비율이 36%밖에 되지 않아 평균인 50%보다 낮은 수준이라 원천징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표 V-1〉 2015년 체납정리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체납발생건수	체납발생금액	총정리금액	현금정리금액	현금정리비율
세목별	3,272,814	187,375	193,421	95,818	50
소득세	1,077,033	54,275	56,010	19,910	36
법인세	81,155	14,365	14,955	5,406	36
상증세	12,497	8,090	7,795	2,564	33
부가가치세	2,019,215	89,509	92,061	57,542	63
기타	82,914	21,136	22,600	10,396	46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가. 높은 원가율

하지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데는 문제도 있다. 아래 〈표 V-2〉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원가율은 94%에 달한다. 1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94원을 원가로 지출하고 6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의 법인은 원가율이 80%로 가장 낮았지만, 수입금액 3

억원 초과 법인은 모두 원가율이 90% 이상이다. 업종별로도 원가율이 80%인 광업과 87%인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가율이 90% 이상이다. <표 V-2>에서 적자법인이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법인의 원가율은 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14%만 원천징수하는 것은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서 법인세의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로소득자는 2015년 기준으로 지급된 근로소득의 1.9%를 원천징수하였는데, 사업소득자의 경우 95%라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해당 부분만큼 차감한다면 대략 0.1%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이 너무 낮아 원천징수에 소요된 징세비용이 원천징수로 인한 효과에 비해 더 과다할 수 있다.

〈표 V-2〉 2015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원가율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원가율
전체	4,468,472,742	274,581,731	93.9
3억원 이하	17,907,814	3,635,720	79.7
3억원~5억원	18,599,049	1,738,050	90.7
5억원~10억원	51,788,619	3,676,597	92.9
10억원~20억원	105,124,839	6,983,972	93.4
20억원~50억원	255,845,873	15,288,730	94.0
50억원~100억원	257,721,411	14,757,827	94.3
100억원~200억원	264,658,157	15,376,870	94.2
200억원~300억원	149,979,232	8,805,612	94.1
300억원~500억원	179,442,998	11,155,174	93.8
500억원~1000억원	231,776,847	14,473,794	93.8
1000억원~5000억원	536,386,609	36,983,794	93.1
5000억원 초과	2,399,241,294	141,705,591	94.1
농·임·어업	12,587,345	808,086	93.6
광업	5,507,305	1,124,712	79.6
제조업	1,779,607,921	122,896,638	93.1
전기·가스·수도업	170,354,266	8,315,085	95.1
건설업	418,818,170	22,205,614	94.7
도매업	620,873,711	23,935,104	96.1
소매업	171,686,426	7,909,587	95.4
음식·숙박업	31,411,123	1,666,036	94.7
운수·창고·통신업	201,361,332	8,801,491	95.6
금융·보험업	697,146,961	45,445,845	93.5
부동산업	56,075,630	7,212,540	87.1
서비스업	268,280,850	23,358,537	91.3
보건업	33,492,005	786,993	97.7
기타 업종	1,269,697	115,463	90.9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또한 원천징수는 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비해 세금의 계산 및 납부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사업체가 개인에 비해 계산·납부 능력이 더 뛰어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법인에 비해서 계산·납부 능력이 뛰어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인세의 원천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측은 법인이거나 소비자인 비율이 더 높다.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능력이 더 부족하므로 기존에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하는 편이 오히려 납세협력 비용이 같거나 더 적을 수 있다.

다. 결제수단 간 형평성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기업 대 기업(B2B) 거래에서는 어음과 계좌이체의 비율이 높아 신용카드 거래의 비중이 낮고 기업 대 소비자(B2C) 거래에서만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거래 비중이 높을 것이다. 거래 수단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차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오고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사용을 유도하는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라. 비용-효익 측면

추가적으로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원천징수는 신용카드사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천징수로 인한 세수의 증가와 신용카드사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카드를 이용한 매출액은 카드사를 통해 매출 정보가 국세청에 모두 보고되므로 Tax Gap이 크지 않다. 미국의 Tax Gap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정보가 충실하게 보고되는 소득의 과소보고 Tax Gap은 7%, 원천징수까지 수행하면 Tax Gap은 1%이다. 6%p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도입하게 되면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막대한 반면 실제

세수 증가분은 미미할 수 있다.

법인세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카드 매출과 같이 완전한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는 소득원천에 대한 원천징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현금 매출 등 소득이 보고되지 않는 원천에 대한 정보 획득을 통해 소득 탈루 비율을 줄이는 편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마. 유동성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은 법인세 비용의 2배로 영업이익의 38.7%에 달한다. 따라서 카드 매출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면 회사의 부채수준에 따라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법인도 중소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이자비용이 영업이익 대비 33.6%에 달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수준임을 감안할 때, 회사의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표 V-3〉 2015년 법인의 이자비용과 법인세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금액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비	금액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	1,279,209,265			2,493,901,376		
영업이익	39,707,486			112,298,161		
이자비용	15,378,880	1.2%	38.7%	37,722,375	1.5%	33.6%
법인세 비용	8,153,944	0.6%	20.5%	24,618,734	1.0%	21.9%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그리고 1년에 12번의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하루에도 얼마어마한 규모의 매출건수가 발생하는 법인들의 경우 원천징수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아래 〈표 V-4〉는 법인의 매출과 매입 구조를 단순화한 것

으로 매출로 발생한 금액을 모두 원가로 투입하고, 이익률은 10%로 가정하였다. 1회차에 매출에 대한 1%의 원천징수는 2회차에 0.1원, 3회차에 0.2원 4회차에 0.4원으로 점점 커졌고 4회차까지의 이익 차이인 0.7원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의 1.5%에 달한다. 1%의 원천징수에 불과하지만, 매출과 매입이 빈번하고 거래 빈도가 많을수록 유동성 차이 및 투자로 인한 이익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표 V-4〉 원천징수에 따른 매출, 원가, 이익 차이

(단위: 원)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합계
원천징수 미시행	매출	100	111.1	123.4	137.1	471.6
	원가	(90)	(100)	(111.1)	(123.4)	(424.5)
	이익	10	11.1	12.3	13.7	47.1
원천징수 시행	매출	100	110	121	133.1	464.1
	원가	(90)	(99)	(108.9)	(119.8)	(417.7)
	이익	10	11	12.1	13.3	46.4
	원천징수	(1)	(1.1)	(1.21)	(1.33)	4.64
차이		-	0.1	0.2	0.4	0.7

출처: 저자 작성

바. 원천징수로 인한 효과가 미미

그리고 이미 법인세는 중간예납을 통해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수의 조기 확보라는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법인은 이미 매년 3월 말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카드 매출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납부세액만 증가시킬 뿐 납세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측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문제도 법인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소득

세를 제외한 소득세 대부분 항목에 대해 원천징수하므로, 전체 체납건수와 금액에서 30%에 가까운 소득세의 비중은 대부분 사업소득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가 그랬듯이 높은 원가율, 납세협력비용, 결제수단 간의 형평성, 유동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더 어렵다. 법인에 비해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원천징수를 확대한다면 특히나 비용-효익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3%를 원천징수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당되는 사업자가 주로 프리랜서에 해당되거나 납세능력이 부족하므로 납세와 징세의 편의 측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과세자료가 없어 원천징수를 통한 세원의 확보라는 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체납건수는 많지만 체납건당 금액은 크지 않다. 따라서 체납업무에 소요되는 건당 행정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체납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탈루 방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해 정보가 보고되더라도, 탈루가 빈번한 인적용역이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는 고려해볼 수 있다.

OECD 조사자료에 따르면 호주와 칠레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인적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한다. 또한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서는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한다. 우리나라는 <표 V-5>와 같이 1996년까지는 개인서비스업과 자유직업 중 면세되는 항목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하였다. 1999년부터 법무서비스와 회계서비스가 과세되면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미국 Tax Gap 보고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소득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는 경우 과소신고 등을 통한 탈루가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굳이 해당 서비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의 보고만으로 부족하고 탈루비율이 높은 업종을 상대로 다시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V-5〉 사업소득 원천징수 변천

제·개정일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1974.12.31	자유직업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3) 설계·건축감독·기술지도·기술용역제공과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13)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을 받는 소득
1982.12.31	자유직업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 (3)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기술용역제공과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재단·무용·요리 및 바둑교사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등을 받는 업 (8)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0)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사가 받는 고문료·수당 (11)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 (13)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을 받는 소득
1990.12.31	1. 사업서비스업 (가) 법무서비스업 (나) 회계서비스업 (다) 해사보좌인업·평가인업 또는 통관업 (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또는 신용조사업 (마)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바) 도선사업·직업소개사업 또는 상담사업 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나)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자유직업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 (3)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기술용역제공과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재단·무용·요리 및 바둑교사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8)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0)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사가 받는 고문료·수당 (11)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

제·개정일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1994.12.31	1.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도선업·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2.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나.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 회계 관련 서비스업 다. 부동산감정업 라. 소프트웨어개발·컴퓨터프로그램개발 및 공급업 등 소프트웨어지문·개발 및 공급업 마. 신용조사업 바. 건축·엔지니어링, 관련기술 서비스업과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사.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나.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영경기업
1996.12.31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 (1) 「의료법」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의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직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1) 개인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용역 (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 (라) 음악·채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가수·운동지도가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등 용역 (차) 고용관계 없이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는 용역 (2)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의 인적용역 (가) 변호사업·해사보좌인업·공증인업·집달관업·변리사업·법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용역 (바) 작명·관상·점술 용역 (사) 가족 기타 동물 훈련 용역

제·개정일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1998.12.31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 (1) 「의료법」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의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업」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8)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분노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10)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직업환경측정용역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1) 개인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등 용역 (차) 고용관계 없이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의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 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라)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각 연도.

위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는 거래의 빈도가 적고, 회당 거래규모가 크고, 인적용역이므로 원가율이 낮으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개인소득세 신고자에 비해서는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에 따르는 문제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가 강화되면 고의적인 탈세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벨기에, 독일, 그리스 터키는 공사대금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탈루가 빈번하고 과소보고 등 Tax Gap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탈루 방지 및 소득 파악의 목적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소득의 정보 보고 유무와 무관하게 업종별로 체납과 탈루율을 비교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체납과 탈루 비율을 보이는 업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V-6〉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국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의용역과 인적용역	3%
일본	작가, 변호사, 회계사, 프로선수, 계약금, 연예인, 법무사, 공인중개사, 치료보수, 연금소득 등	10.21% or 20.42%
호주	예술가, 강사, 번역가 등 개인의 인적용역	종류에 따라 다름
벨기에	정부에 부채가 존재하는 건설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공사대금	15%
칠레	개인의 인적용역	10%
	소규모 채광업자	1~4%
독일	모든 공사 관련 대금	15%
그리스	하도급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3%
	공사대금	3%
	외국 공급 업체	15%
이탈리아	전문직 자영업자	20%
	대리인, 중개인, 판매담당자	23%
	콘도서비스 대금	4%
멕시코	개인자영업자, 법인과 거래하는 자영업자 소득, 개인이 수취하는 임대료	10%
스페인	전문 서비스	15%
	농업, 축산 및 임업활동	1~2%
터키	1년 이상 공사의 하도급 대금	13%
	영세한 농업종사자	1~4%
	전문 서비스	22%

출처: 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Compliance sub-group*, 2009. 8.

3. 부가가치세

가. 높은 체납비율과 VAT Gap

2015년 세목별 체납비율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총징수결정액 60조원 중에서 9조원에 육박하는 14.8%가 체납되어 소득세 체납비율 8.2%와 법인세 체납비율 3.1%에 비해 현저히 높다.

2010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갭(VAT Gap)을 2010년 산업연관표와 생산자가격기준으로 추정한 결과는 약 10.6조원이며, VAT Gap 비율은 17.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결손 및 미정리체납액 3.1조원을 제외하면 탈루나 각종 조세회피 등으로 인한 세수손실은 약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V-7〉 2015년 세목별 체납비율

(단위: 건, 억원, %)

구분	징수결정액	체납액	체납비율
소득세	665,044	54,275	8.2
법인세	463,622	14,365	3.1
부가가치세	603,168	89,509	14.8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표 V-8〉 2010년 VAT Gap(생산자가격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생산자가격)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578,041
(±) 추가조정	(+) 19,463
조정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A)	597,504
(-)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 491,212
VAT Gap (B)	106,292
VAT Gap 비율 (B/A)	17.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

나. 체납 정리 실적

체납발생액과 현금정리액 및 정리 중 체납액을 다른 소득세, 법인세와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체납 건수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았으나 건당 금액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체납발생건수는 200만건이 넘어 109만건과 8만건의 법인세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체납액도 9조원으로 소득세 5.4조원과 법인세 1.4조원에 비해 컸다. 하지만 건당 금액은 400만원으로 소득세 500만원과 법인세 1,800만원에 비해 적었다. 따라서 체납업무에 소요되는 건당 행정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체납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효율성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V-9〉 세목별 정리실적 및 미정리 건당 금액 비교(2015년 기준)

(단위: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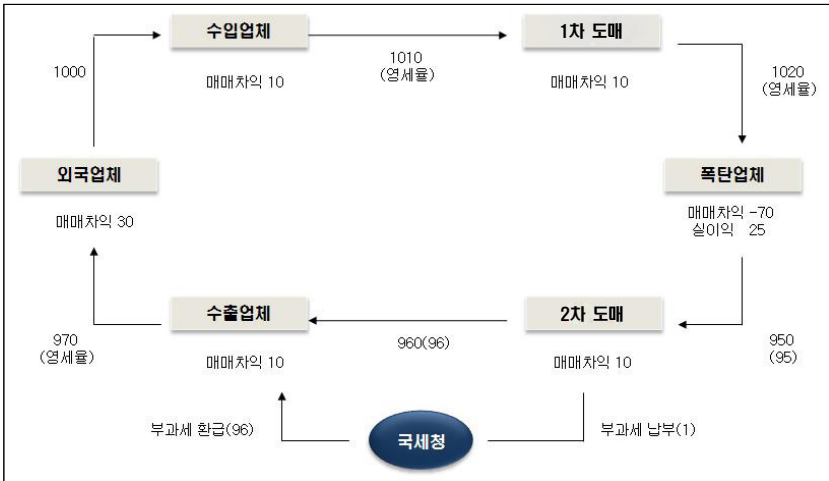
2015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당해연도 체납발생액	건수	1,077,033	81,155	2,019,215
	금액	54,275	14,365	89,509
	건당 금액	0.05	0.18	0.04
현금정리	건수	917,228	60,143	1,694,590
	금액	19,910	5,406	57,542
	건당 금액	0.02	0.09	0.03
정리보류	건수	178,558	16,227	248,994
	금액	31,772	7,337	27,657
	건당 금액	0.18	0.45	0.11
정리 중 체납	건수	502,592	39,502	1,008,039
	금액	18,062	5,035	32,241
	건당 금액	0.04	0.13	0.0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다. 폭탄업체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악의적인 탈루

부가가치세는 폭탄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해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탈루 사례가 빈번하다. 위장가맹점이란 사업자가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실제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을 의미한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무재산자로 체납 시 대부분 결손처리되고 추후에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은닉하거나 소비한 뒤라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림 V-1] 폭탄업체를 이용한 변칙거래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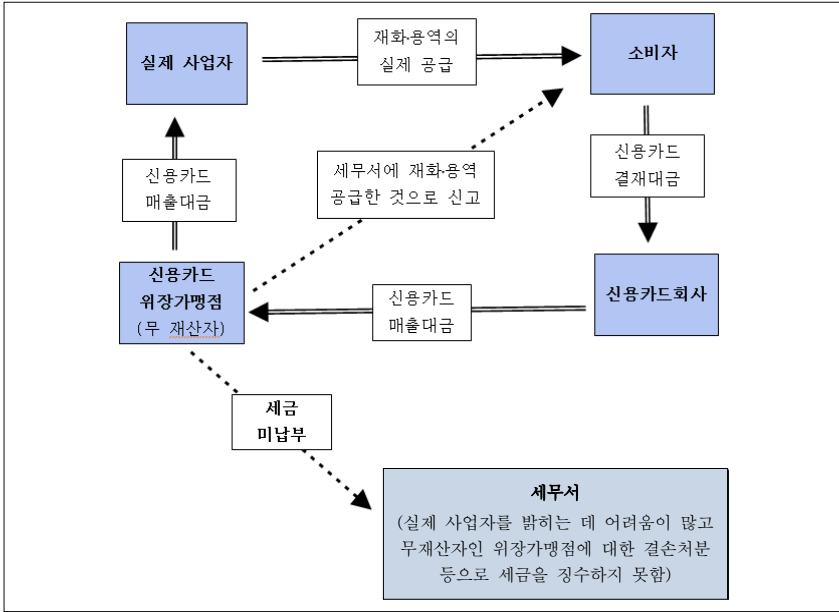
주: 1. 실질환급 = 포탈액(95)분배 = 수입업체(10)+수출업체(10)+1,2차 도매업체(20)+폭탄업체(25)+외국업체(30)

2. () 안은 부가가치세.

자료: 한겨레, 「금리 변칙거래 2조원대 세금 도둑질」, 2008. 2. 18.

폭탄업체란 금지금 등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주는 면세금 지급제도를 악용하여 수입한 뒤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하는 행위다. 폭탄업체가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진 폐업하더라도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어 [그림 V-2]의 주1처럼 부가가치세 95원의 포탈이 발생한다.

[그림 V-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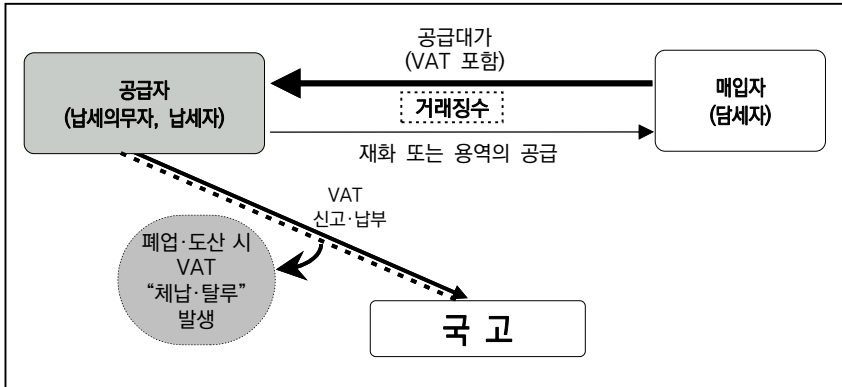
폭탄업체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B2B 거래를 중심으로 2008년 7월 금지금, 2009년 7월 고금, 2014년 1월 구리 스크랩, 2015년 7월 금 스크랩, 2016년 10월 철 스크랩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점차 확대되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매입자납부제도를 B2C까지 확대 적용하여 유흥주점업 등 체납율이 높은 업종부터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 비해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직접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⁷⁾와 담세자⁸⁾가 같은

세금으로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된다. 하지만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으로 주로 소비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림 V-3] 부가가치세(간접세) 거래징수 개념도



출처: 저자 작성

법인세나 소득세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세액으로 이어질지 불확정적인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담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담세자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마. 해외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2006년 EU 위원회는 재정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처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7년 EU 이사회는 조세사기에 대응할 방

- 7)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8)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

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EU 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였다. 2008년 2월 EU 위원회는 조세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general reverse charge system)와 역내거래 과세제도(system of taxation of intra-community transactions) 2가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8년 12월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2009년 9월 일부 회원국이 부가가치세(VAT)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부문이나 특정 재화에 대해서는 부분 매입자납부제도(targeted reverse charge system)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EC는 부분 매입자납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2년 6월에는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영국은 재화에서는 핸드폰, 컴퓨터칩, 도매용 가스와 전기를, 용역에서는 탄소배출권에 부분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5~2006년 영국의 VAT Gap에서 행방불명 무역업자 MTIC 사기는 25억~35억파운드(한화 3.7조~5.2조원)였지만 2014~2015년 영국의 VAT Gap에서 MTIC 사기는 5억~10억파운드(한화 7,500억원~1.5조원)으로 75% 가까이 크게 감소하였다. VAT Gap의 비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10.3%로 30% 가까이 감소하였다.

〈표 V-10〉 영국의 VAT Gap 추정치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2005~2006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 총액	85.3	111.0	114.3	118.2	124.1
실제 징수세액	73.0	98.4	100.7	104.8	111.4
VAT Gap	12.3	12.5	13.5	13.5	12.7
- MTIC 사기 ¹⁾	2.5~3.5	0.5~1.0	0.5~1.0	0.5~1.0	0.5~1.0
- Debt	-	1.8	1.3	1.2	1.5
- Other Losses	8.8~9.9	9.7~10.2	11.2~11.7	11.3~11.8	10.2~10.7
VAT gap (%) ²⁾	14.5	11.3	11.8	11.4	10.3

주: 1)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issing Trader Intra-Community Fraud: MTIC Fraud).
 2) VAT gap 비율은 부가가치세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 총액 대비 비율을 나타냄.

자료: HMRC, *Measuring Tax Gaps 2016*, 2016, 9, p. 25.

2014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EU 28개국 중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없고,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MTIC 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국가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부동산의 공급, 중고품, 담보물의 실행, 핸드폰 등의 공급, 건설용역, 탄소배출권, 스크랩과 폐기물이 주를 이루었다.

〈표 V-11〉 EU 국가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품목

국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품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중고품 ▪ 담보로 제공된 물품 ▪ 거래 건당 5,000유로 이상의 핸드폰과 집적회로 ▪ 건설용역 ▪ 건물 청소 용역 ▪ 탄소배출권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선택한 부동산 공급 ▪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 이동통신서비스의 단말기 공급 ▪ 컴퓨터와 구성품 ▪ 각종 스크랩과 폐기물 등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대금 ▪ 부동산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의 실행 - 공급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선택 ▪ 중고품 ▪ 탄소배출권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 청소, 유지, 보수, 개조 및 해체 등 건설작업(조선 포함) ▪ 건설작업의 양도 ▪ 건설 분야 종사자의 공급 ▪ 공급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선택한 부동산 공급 ▪ 중고품, 스크랩, 폐기물 ▪ 담보의 실행으로 인한 물품의 공급 ▪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채무자가 판매하는 부동산 ▪ 탄소배출권 ▪ 핸드폰, 칩, 게임기, 노트북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와 전기의 공급 ▪ 산업폐기물 ▪ 탄소배출권 ▪ 전자통신 서비스

출처: EC,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optional 'Reverse Charge Mechanism' within the EU VAT system*, 201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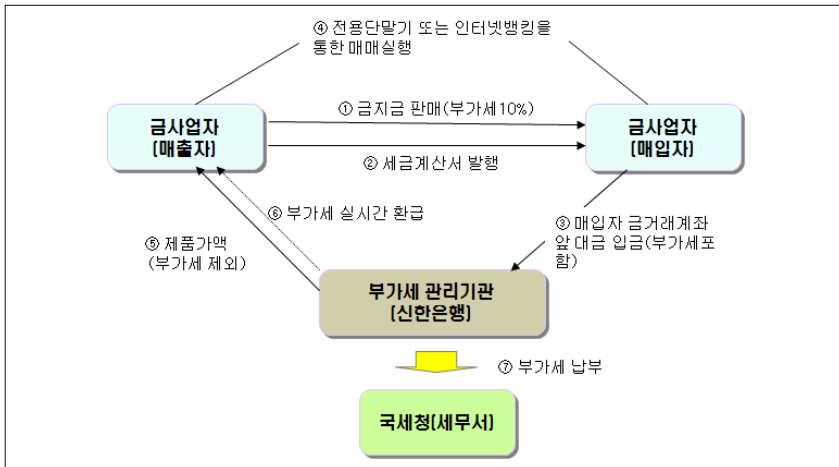
VI.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1. 제도 소개

가. 금지금 등의 매입자납부제도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상호가 기재된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 관련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본인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한다. 그러면 지정금융기관은 제품가액과 상대방이 입금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실시간으로 매출자에게 정산·환급한다.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되어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한에 사업자별로 국고에 입금한다.

[그림 VI-1] 금거래 결제업무 흐름도



출처: 국세청, 「금 관련 제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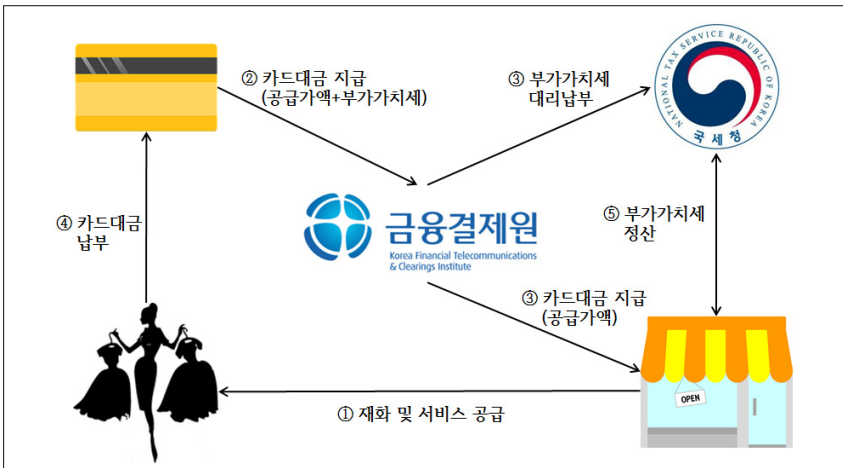
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1) 2017년 세법개정안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B2C 거래 중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다음의 과정을 거쳐 금융결제원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대리납부된다.

-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함
- ② 신용카드사는 금융결제원에 카드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지급함
- ③ 금융결제원은 카드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카드대금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지급함
- ④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카드대금을 납부함
- 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가맹점은 국세청과 부가가치세를 정산함

[그림 VI-2] 금융결제원을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출처: 저자 작성

2) 에콰도르 등 남미국가

에콰도르도 사업자 실종과 같은 방식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1997년 부가가치세에 원천징수를 도입하고 모든 신용·직불카드 증개자를 원천징수 대리자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에서 도입 준비 중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와 유사하게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해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부가가치세 일부 또는 전부가 재무부로 이전된다.

에콰도르의 원천징수 비율은 30%, 70% 또는 100%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천징수 대리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재무부에 송금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부가가치세 탈루는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남미국가 전반적인 문제로, 에콰도르의 매입자납부제도는 남미국가에 퍼져나갔다. 여타 남미국가에 도입되면서 신용·직불카드 사업자에 은행이나 보험회사까지 확대되어 제3자를 통한 원천징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에콰도르가 추산한 2010년도 소득세 탈세 규모는 45%였으나,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21%로 소득세 탈루 규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탈세 규모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를 통해 입증되었다.

2. 금융결제원을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필요성

금융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신용카드사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단계가 줄어들어 간단해질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비용과 정보 공개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해서 2016년에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85%,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53%가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이용건수가 이용금액보다 더 크게 증가해서 건당 평균이용금액은 2010년 54,832원에서 2016년 45,325원으로 17%가 감소하였

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가속화되어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활성화된다면 건당 이용금액이 감소하며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VI-1〉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 건수와 이용금액

(단위: 백만건, 십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용건수	5,254	5,965	6,793	7,414	8,064	8,954	9,744
이용금액	288,061	327,757	359,670	372,840	385,197	405,058	441,656
건당 이용금액(원)	54,832	54,943	52,946	50,287	47,765	45,240	45,325

자료: 한국은행, 『지급결제통계』, 각 연도.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민간기업이고 신용카드사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당 비용은 최초로 22원이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단순히 해당 신용카드망을 사용하는 비용만 해도 22원이나 소요되었다. 하지만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사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부과되면 카드사마다 다른 시스템을 교체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른 인프라비용과 유지비용을 모두 예산으로 보충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나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어 신용카드 이용건수가 계속 증가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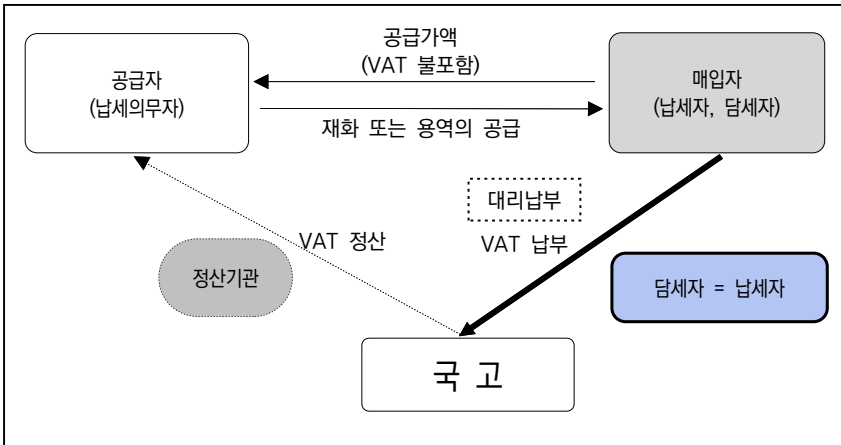
또한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직전연도 매출액, 간이과세 여부, 과·면세 여부 등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민간기업인 신용카드사보다 금융결제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서 대리납부를 수행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낮다.

3. 기대 효과

가. 세수 증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납세자는 이미 납부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납세자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VAT Gap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되면 B2C 거래에서만큼은 VAT Gap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3] 대리납부로 인한 기대 효과



출처: 저자 작성

2015년 카드 결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종소비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업종 중에서 체납율이 높은 업종으로 주점업과 주유소업을 선정하여 카드사 대리징수 도입 시 세수 증대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과세기간별로 약 1,846억원(연간 3,69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에, 거래 및 결제 과정에서 문제점과 시행효과를 파악한 이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VAT Gap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시 세수 증대효과 추정

(단위: 억원)

구분		세수효과		
		평균	최소	최대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12	0	61
	무도유흥 주점업	9	0	22
	기타 주점업	294	193	394
주유소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1,414	739	2,129
	차량용 가스 충전업	117	27	213
계		1,846	959	2,819

자료: 김완석,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15.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확대된다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거래 후 폐업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경우는 문제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폐업 또는 도산으로 인해 미리 수령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보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함께 해결이 가능하다. 즉, B2C의 신용카드 거래만큼은 징수 결정된 부가가치세를 완벽하게 걷을 수 있다.

나. 납세의식 제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담세자를 대신해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징수한 뒤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마치 직접세처럼 인식하여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자신의 사업자금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폐업·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통해서 전체 공급대가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고 공급가액만 수령하게 된다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간접세로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4. 한계점

가. 과소보고 문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징수 결정된 부가가치세를 누락없이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VAT Gap의 유형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문제,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있어 체납이 있었을지라도 과소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현금과 신용카드라는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을 달리 받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으며, 신고 시에 신용카드 결제분과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탈세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는 여전하다.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양성화된 과표인 만큼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추가징수분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현금결제나 악의적인 과소보고를 통해 누락되는 VAT Gap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VAT Gap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나. B2B 거래

1) 한계점

신용카드 결제는 주로 B2C에서 이루어지므로 B2B의 VAT Gap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어서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B2C 거래를 제외한 B2B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와 소득자료의 확보 목적이 더 강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의 측면에서는 B2B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B2B 거래에서는 MTIC 사기나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는 VAT Gap 해결을 위한 반쪽짜리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B2B 거래에서 VAT Gap 문제를 해소하면서 기존의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소득원천 파악이라는 고유의 목적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해결방안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B2B 거래를 중심으로 2008년 7월 금지금, 2009년 7월 고금, 2014년 1월 구리 스크랩, 2015년 7월 금 스크랩, 2016년 10월 철 스크랩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MTIC 사기와 폭탄업체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매입자납부제도의 점차적인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U 28개국의 2014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품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스크랩이나 폐기물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21개국으로 75%나 된다. 하지만 이외에도 건설용역 등에 제한적으로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9개국이며, 부동산 거래에 도입한 국가도 11개국이나 되었다. 이밖에도 각 국가별로 곡물, 목재, 철, 조선 등 각자 나라의 특성에 맞게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이나 스크랩이 아닌 다른 부가가치세 탈루가 심한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3〉 EU 28개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품목

국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품목							
	건설	부동산	전자기기	전기 가스	탄소 배출권	담보	스크랩 폐기물	기타
오스트리아	○	○	○	○	○	○	○	철
벨기에	○				○			
불가리아							○	곡물
크로아티아	○	△			○		○	
키프로스	○						○	
체코	○				○		○	
덴마크			○		○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프랑스				○	○		○	통신
독일	○	○	○		○	○		중고품
그리스					○		○	
헝가리	○	○			○		○	곡물, 질권
아일랜드	○	△			○		○	
이탈리아	△	△	○				○	
라트비아	○						○	목재
리투아니아	△					○	○	목재
룩셈부르크					○			
몰타	○							
폴란드							○	철, 구리
포르투갈	○	○			○		○	
루마니아				○	○		○	목재, 곡물
슬로바키아		○	○		○	○	○	곡물, 철재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중고품
스웨덴	○				○		○	
네덜란드	○	○			○	○	○	중고품, 조선
영국			○	○	○			
합계	19	11	6	4	20	5	21	

주: △는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경우.

출처: EC,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optional 'Reverse Charge Mechanism' within the EU VAT system*, 2014, 11.

VII. 결론

용어와 범위는 모두 달랐지만 몇몇 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일본의 원천소득세, 인도의 Tax Deducted at Source는 모두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Withholding tax는 소득 지급을 보류하여 탈루를 방지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고, 영국의 PAYE와 호주의 PAYG는 버는 만큼 낸다는 납세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인도와 같이 임대료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세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종류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있어서 원천징수의 범위에 있어서는 넓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개인소득세에 한정짓지 않고 법인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검토해본 결과,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는 적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의 필요성도 크고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법인은 원가율이 95%에 달해 매출이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원천징수를 통한 추가적인 징세비용에 비해 법인세 세수 증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카드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결제수단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원천징수로 인한 유동성의 제약과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중간예납의 실시는 법인세 원천징수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개인 사업소득세도 법인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원천징수의 적용이 쉽지는 않았다. 현재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의용역과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지만,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했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소득세 탈루율이 높은 공사대금,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던 시기에는 전문직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했지만, 과세로 전환되면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전문직 서비스는 거래 빈도가 적고, 회당 거래규모가 크며, 원가율이 낮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아 충분히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업종별로 체납과 탈루율을 비교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업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체납비율이 2015년 기준 14.8%에 달하고 체납액은 8.9조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비해 높았다.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와 달리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탈루는 담세자가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폭탄업체를 통한 악의적인 탈루로 인해 VAT Gap이 2010년 기준으로 17.8%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 EU 위원회에서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도입을 논의하여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부터 부분적으로 적용을 시작하였다.

영국은 핸드폰, 컴퓨터칩, 도매용 gas와 전기, 탄소배출권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2006년 25억~35억파운드에 달하던 MTIC 사기는 2014~2015년 5억~10억파운드로 크게 감소하였다. EU 28개국은 모두 건설용역, 탄소배출권, 스크랩 및 폐기물, 부동산 공급, 전자기기 등에 부분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금지금을 시작해서,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까지 점차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7년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대리납부제도가 포함되어 B2C 거래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악의적인 탈루를 막고, 폐업·도산으로 인해 체납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통해 VAT Gap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B2B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주점업·주

유소업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대리납부제도의 범위를 넓혀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고 VAT Gap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선소득세령』, 각 연도.
_____, 『소득세법 시행령』,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원천징수 안내』, 각 연도.
김석환, 「미국 소득세제의 기원에 대한 소고」, 『조세법연구』, 2009.
김완석,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5.
김재진·이정미·유현영,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9.
최원,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포럼』, 2011.
한겨레, 「금리 변칙거래 2조원대 세금 도둑질」, 2008, 2. 18.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
_____, 『지급결제통계』, 각 연도.
- EC,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optional 'Reverse Charge Mechanism' within the EU VAT system*, 2014, 11.
Government of Canada, *Public Account of Canada 2016-2017*, 2017.
HMRC, *Measuring Tax Gaps 2016*, 2016, 9.
India Income Tax Department, *Time Series Data Financial Year 2000-01 to 2016-17*, 2017.
IRS, *Tax Gap Estimates for Tax Years 2008-2010*, 2016, 4.
_____, *Internal Revenue Service Data Book*, 2016.
National Tax Agency, *The 141th National Tax Agency Annual Statistics*

Report, 2016.

OECD, *Tax Administration in OECD Countries*, 2004.

_____, *Forum on tax administration: Compliance sub-group*, 2009. 8.

〈웹사이트 자료〉

Government of Canada, <http://laws-lois.justice.gc.ca>(접속일자: 2017.10.12.)

_____, “Income Tax Act 153”,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I-3.3/section-153.html>(접속일자: 2017.10.12.)

국세청, 「금 관련 제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안내」, http://www.nts.go.kr/call/vat/2015_03/htm/13R000.htm(접속일자: 2017.10.12.)

미국 국세청(IRS), <https://www.irs.gov/>(접속일자: 2017.10.17.)

영국 국세청, www.gov.uk/tax-codes(접속일자: 2017.10.17.)

인도 원천징수세율, <http://blog.tdsman.com/2017/04/tds-tcs-rate-chart-fy-2017-18-ay-2018-19/>(접속일자: 2017.10.1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ation-statistics/Taxation-statistics-2014-15/?anchor=Payasyougo#Payasyougo>(접속일자: 2017.10.19.)

호주 법령정보센터, http://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legis/cth/consol_act/taa1953269/sch1.html(접속일자: 2017.10.19.)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와 원천징수의 적용 확대 가능성 연구

김재진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연금소득, 기타소득, 일부 사업소득에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의 60%, 법인세의 25%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국세청 세수에서 4분의1을 차지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므로, 탈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기 때문에 세수를 평탄화하며 거래·소득 자료로 활용되어 응능과세원칙을 구현하며 납세와 징세의 편의에도 기여한다.

프랑스 및 몇몇 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인도와 같이 임대료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세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종류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있어서 원천징수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넓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원천징수를 개인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검토해본 결과, 법인세와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데 제약이 존재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높은 VAT Gap으로 인해 원천징수의 필요성도 크고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은 매출원가율이 높아 매출이 이익으로 곧장 이어지지 못해 원천징수 제도 확대에 기대되는 법인세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B2C 거래와 달리 B2B 거래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효과적이지 못하며 결제수단 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로 인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매출과 매입에 영향을 미쳐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미 중간예납을 실시하고 있어 원천징수와의 중복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개인 사업소득세도 법인세와 유사한 문제로 인해 원천징수의 확대가 용이하지 않지만,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실시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탈루율이 높은 공사대금,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문직 서비스는 거래 빈도는 적지만 거래규모가 크고 인적용역에 의존하므로 원가율이 낮아 법인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으므로, 업종별로 체납과 탈루율을 비교하여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확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2015년 기준으로 체납비율이 14.8%, 체납액은 8.9조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부가가치세의 탈루는 담세자가 이미 부담하였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폭탄업체를 통한 악의적인 탈루로 인한 우리나라의 VAT Gap은 2010년 기준 약 17.8%이며, EU도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설용역, 탄소배출권, 스크랩 및 폐기물, 부동산 공급, 전자기기 등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핸드폰, 컴퓨터칩, 도매용 가스 및 전기, 탄소배출권에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2005~2006년 25억~35억파운드에 달하던 MTIC 사기가 2014~2015년 5억~10억파운드로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금지금을 시작해서,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까지 점차 부가

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확대되었고, 2017년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 대한 대리납부제도가 포함되어 B2C 거래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악의적인 탈루를 막고, 폐업·도산으로 인해 체납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통해 VAT Gap이 감소하고 부가가치세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Major Countries' Withholding Tax System and its Possibility of Expanded Application

Jae-Jin Kim

At present, Korea deducts withholding tax on all income(excluding capital gain tax), which includes earned income,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retirement and pension income, other income, and some of business income. 60% of income tax and 25% of corporate tax are deducted, and the total amount of this withholding tax is one-fourth of the total tax revenue of the National Tax. There are multiple benefits of the withholding tax system: 1) since Government collects the tax in advance via withholding tax, it helps solving tax evasion problem, 2) It evens out tax revenue as the tax is collected every month, 3) It realizes ability-to-pay principle, 4) It contributes to the convenience of tax payment and collection.

Almost all countries deduct withholding tax from income tax, except for a few exceptions like France, or India - where it deducts withholding tax from rent and real estate income tax. Korea's scope of applying withholding tax is relatively larger than many other countries, as it applies to all kinds of income earned by an individual.

I reviewed ways to even further expand the scope of Korea's

withholding tax to corporate tax, business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While there were some restrictions on applying withholding tax on corporate tax and business income tax, the need to deduct withholding tax on VAT is big due to high VAT Gap; and the application was much more convenient to do so. To explain more in detail,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ubstantial tax revenue increase from deducting corporate tax as corporate's ratio of cost/turnover tends to be high – which means revenue will not equal to profit. Also, with smaller proportion of credit card settlement in B2B compared to B2C, withholding tax is not as effective and could cause equity problems coming from differences in payment methods. In addition, withholding tax could affect the sales and purchases that arises frequently in a company and thus cause liquidity problems; and probably have similar effect with their interim payment.

Individual business income tax faces similar limitations to corporate tax, but taxing industries like construction services, professional services could be an option. Professional services have a low transaction frequency but a large transaction volume; it being largely dependent on human service makes the cost ratio low, which means smaller chances of facing similar problems to that of the corporate tax. Therefore, expanding withholding tax on a specific industry by studying each industry's tax delinquency rate and evasion rate is fully realizable.

As of 2015, the VAT delinquency rate was 14,8% and the total amount in arrear was 8,9 trillion KRW, a relatively high number than that of the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High amount of VAT arrear, being an indirect tax, presents more serious problem than direct tax, as VAT arrear means VAT is not delivered to the government even though the purchaser

already paid the VAT. In addition, intentional tax evasion through methods such as disguised card affiliate store, MTIC Fraud in 2010 was estimated to be about 17.8% in Korea; The EU has recognized the severity of this problem and has applied the 'Reverse Charge' since 2009 to businesses that frequently face value-added tax evasion problems, such as construction services, carbon credits, scrap and waste, real estate supply,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UK has introduced the Reverse Charge to businesses in mobile phones, computer chips, wholesale gas and electricity, and carbon credits. As a result of that, MTIC Fraud in UK, which amounted to £2.5~3.5 billion in 2005~2006, was reduced to £0.5-1 billion in 2014~2015. Korea, since July 2008, also gradually expanded the Reverse Charge starting from high-grade gold, copper scrap, gold scrap, and steel scrap. Now credit card payment has been included in the 2017 tax law amendment, thus expanding to B2C transactions. This change is expected to stop malicious tax evasion through disguised credit card stores, MTIC Fraud, etc. We will end up with more VAT revenue with reduced VAT Gap by preventing VAT arrears.

김재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학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발행	행	2017년 12월 29일
저자	자	김재진
발행인	인	박형수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4,000원
조판 및 인쇄	쇄	호정씨앤피
I S B N		978-89-8191-915-3 933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